

제 19 회

#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33호

국회사무처

단기4287년8월20일(금) 상오10시

### 의사일정(제33차 회의)

1. 제32차 회의록 통과
2. 보고사항
3. 금융계 부정사건과 농림부 의옥사건에 대한 질문
4. 민사소송비용법안 제1독회
5. 민사소송인지법안 제1독회

### 토의된 안건

1. 대한해운공사, 대한조선공사 및 조선운수주식회사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건 ..... 19
2. 민사소송비용법안 제1·2독회 ..... 28
3. 민사소송인지법안 제1·2독회 ..... 32
4.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 36

(상오 10시10분 개의)

○부의장 최순주 제3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32차 회의록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제32차 회의록 낭독)

방금 낭독한 32차 회의록 중에 착오라든지 누락이 있으십니까?

만일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다음 보고사항입니다.

○의사국장 서상준 정부에서 8월 17일자로 연초 가격 및 소금 판매가격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 요청이 나왔습니다.

단기 4287년 8월 17일

국무총리 변영태

국회민원의원장 이기봉 귀하

전매가격(제조 연초 정가 및 염 판매가격)

개정의 건

수제 건에 관하여 현재 전매가격을 별 안과 여러 개정코저 자에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심을 경망하나이다.

추기 본건은 특히 기밀을 요하므로 심의에 있어서 극비 취급하여 주시압기 요망 첨언 하나이다.

본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합니다.

8월 19일자로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남송학 의원으로부터 대한해운공사, 대한조선공사 및 조선운수주식회사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는 승인 요청이 제출되었습니다.

단기 4287년 8월 19일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남송학

민원의원장 이기봉 귀하

대한해운공사, 대한조선공사 및 조선운수주식회사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건 교통부 산하에 있는 전기 3회사의 현황은 불합리한 운영 등으로 극도의 곤경에 처해 있으며 그로 인한 국내 해운계에 미치는 영향 및 타격은 심대하므로 좌와 여한 요령에 의하여 국정감사를 실시코저 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기 자에 보고하 나이다.

기

주문

『대한해운공사, 대한조선공사 및 조선운수주식 회사에 대하여 국정감사할 것을 의결함』

1. 감사기간 단기 4287년 자(自) 8월 22일 (至) 9월 4일 14일간

1. 감사의원 김재곤 신의식 구홍남 정명섭 장영근(자유), 백남식(무동), 서동진 박재홍(무)

1. 전문위원 유태영

1. 출장용무지 서울 대구 부산

지난 7월 16일 윤보선, 이정희 양 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질문한 데 대하여 정부에서 서면 답변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즉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9개 부처로부터 서면 답변이 왔습니다.

단기 4287년 8월 18일  
국무총리 변영태

민원의의장 이기봉 귀하

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의 건

지난 7월 16일 윤보선 의원 및 이정희 양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별지와 여히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소관 부처

국무총리, 외무, 내무, 보건, 상공, 재무, 문교, 교통, 사회, 체신 이상.

본건은 유인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별지)

정부 시정방침에 대한 질문과 답변

국무총리, 외무부 소관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

1. 윤보선 의원 질문

문 국무총리는 신질서를 세우는 데 여하한 방침이 있는가?

답 본래 질서는 있는 것이니 질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키는 것이 문제이다. 법의 수호와 공정한 행정 그리고 국민 계몽에 상당한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질서를 바꾸잡을 방침이다.

문 국민생활의 질소건설이 요청되는바 총리 자신이 솔선수범하여야 될 것인데 귀견 여하?

답 전혀 동감이다. 두고 보면 알 것이다.

문 공무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구체적 방안 여하?

답 최저생활 보장 문제는 공무원에 한한 것뿐 아니라 국민 전반에 공한 중요 문제이다. 국민 전체의 생활을 나았게 하는 일반 경제사태가 개선됨이 없이 국민의 일부의 생활만의 안전을 영속적 의미로 보게 할 도리는

있기 어렵다. 정부의 예산형편 등을 참작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할 작정이다.

2. 이정희 의원 질문

문 시정연설 중에서 과학교육과 실업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귀견 여하?

답 과학교육과 실업교육은 우리가 가장 결함을 느끼고 있는 동시에 그 확충의 필요를 심절히 깨닫는 바로서 양질 공히 확충 향상시킴을 주력하기로 하고 있으나 문자상 표현이 아니 되었을 뿐이다.

문 농촌 중심의 행정에 대한 포부와 소견 여하?

답 국민의 대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이 농촌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나 경제만 하더라도 도시경제와 전연 절대하여 농촌경제만이 토의될 수 있지 않은가 한다. 현재 당면한 문제인 곡가의 저염으로 인한 농민의 생활고는 도시 생산의 대폭적 발전에 의한 일상생활품의 염가유지로서만 해소될 수 있으리라 본다. 요컨대 농촌이나 도시가 상상공존에 유기적 관계를 가진 일개의 공동생활체의 표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 농촌에는 인적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일면 도시에는 상당한 수의 장정이 부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책 여하?

답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관련되어 있다 하겠는데 첫째 농촌의 생활 안정, 농민 향상 발전의 기회 증대에 대한 시책들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장정 징소집에 있어서도 도시와 농촌 간에 공평과 균형을 취할 수 있도록 별반의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는다.

3. 윤보선 의원 질문

문 해외교포 보호책이 불완전하며 또 재일교포에 대한 보조비 지출과 기업자금 용자 알선을 하였다든 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답 항상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형편상 불충분한 것은 사실이다. 재일교포에 대한 보조비는 작 회계연도에도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었고 재일교포의 기업자금, 용자도 세부적인 실행안이 작성되었으므로 근간 실행에 착수할 것이다.

문 아직까지도 장학관을 해외에 파견하여 유학생을 지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귀견 여하?

답 지연된 것은 유감이다. 명칭은 장학관이 될

는지 모르나 여하간 이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의 성과는 상당한 재정적 조치를 요한다고 봄으로 단순한 그 방면에 대한 인원 배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으므로 정부의 재정형편이 용허하는 때에 실행하기로 하고 있다.

문 주일대표부를 강화하고 책임자를 갱질할 의사 여하?

답 강화에는 찬성이며 현재 강화 중에 있다. 단지 책임자의 갱질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하여는 벌써 구두로 대답한 바가 의사기록에 남은 줄로 생각한다.

내무부 소관

문1. 5·20 총선거 자유 분위기와 불법 간섭자에 대한 문제

답 5·20 총선거에 있어 자유 분위기는 보장되었다고 본다. 만일 선거 간섭한 관리가 있다면 조사하여 선처하겠다.

문2. 서울을 위시한 전국 28개 중요 도시 판자집을 강제 철거하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책 여하?

답 현하 판자집은 도시부흥계획 추진상 일대암이 될 뿐 아니라 도시에 있어서 대화재의 원인이 대부분 판자집으로 생긴한 실 사례에 비추어 이의 예방대책으로 우선 부산, 서울을 중심으로 점차 실시 중인바 원래 판자집 건축은 허가 당시에 기한부로 허가한 것이며 또한 기한 내라 할지라도 당국의 지시가 유할 시에는 하시라도 무상 철거할 것을 전제로 허가하였으므로 보상 문제는 고려키 난하나 국민의 실정을 참작하여 철거시기에 대한 고려와 이전 처 없는 자는 적당한 이전 장소를 알선하여 주고 있으며 극빈자에 대하여는 사회부의 대책을 요청 중임.

문3. 농촌 잡부금 단속 여하?

답 법령에 위배되는 농촌 잡부금의 단속에 관하여는 작년 9월 대통령 각하의 유시가 있었으며 이래 일체 불법적 과정을 엄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령에 모집이 허용되어 있는바 과세 부담이라 할지라도 관계 부처에 연락하여 자진 폐지 또는 압제하도록 종용하는 한편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하

여 그 모집을 허가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도 극도로 압제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미비한 점도 있으며 특히 금지 대상이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등록된 단체가 징수하고 있는 회비 등에 대하여는 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개정하여 법인이나 등록된 단체의 회원이 회비를 거출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민 부담의 조종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폐지, 정지 또는 감액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회부 중에 있어오니 조속히 통과하여 주시기 요망함.

재무부 소관

윤보선 의원에 대한 답변서

1. 일부 특권층에만 용자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 적은 금액으로서 막대한 용자 수용자에 응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중점적인 용자가 있었음은 불가피한 사실이었으며 이의 시정을 위하여 가급적 가능한 한도의 금액을 중소기업용 및 농촌금융으로 방출할 예정이며 은행법의 조속 실시, 은행주식 불하 등을 통하여 금융의 자주적 민주화를 도모코저 하고 있습니다.
2. 농촌금융의 개선을 위하여는 현재의 금융조합 제도를 개편하여 새로운 구상하에 농촌금융기구를 만들려고 연구 중에 있으며 영농자금의 종래 폐단도 이를 시정 개선하여 꼭 농촌생산에 도움이 되도록 할려고 합니다.
3.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옹크라계획에 의한 자금 방출을 위시하여 가능한 많은 금융을 생산 방면에 방출하는 동시 공설전당포제 무진업무의 확충 개선 등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4. 용자된 돈의 유용 및 연체 등 대책에 대하여는 각 금융기관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의 시정에 노력하겠습니다.
5. 생산을 수반하는 용자는 인플레이션 억제책의 일방책이라고 말씀하신 점에 대하여나 역시 동감입니다.
6. 세제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주세, 기타 말씀하신 점은 현재 정부 당국에서도 세제의 합리적 개편을 연구 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그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문교부 소관

1. 문교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인 국책을 확립하

라.

답 국가백년의 대계인 교육 사업에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이 의원의 의견에는 본관도 찬동하는 바이며 세계의 모든 나라는 각기 건국의 이념과 국가민족에 알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그 구현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사한 국가의 기본정책은 국민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으므로 입법조치를 요하는 것이며 행정부의 전단으로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국의 교육정책은 헌법 제16조와 교육법에 의하여 확립되었으며 그 기본정신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과 문화의 토대 위에서 균등한 교육을 받음으로 민주국가의 창건과 발전을 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기본이 될 교육이념, 교육목표, 교육의 방침과 방법, 교육의 제도와 관리 등에 관하여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행정부의 방침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교부장관이 경질이 되는 경우에 기정의 교육정책의 어떤 일부가 특히 강조되어 민족정신의 고취, 전시체제의 강화, 반공항일의 강조 등 중점을 달리하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아국의 기본적 교육정책의 영역을 일탈하는 일은 없으며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장관의 포부에 따라 이런 정도의 강조점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2. 의무교육의 완전 실시에 관한 추진책 여하?

답 의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 의원의 견해에는 본관도 전적으로 동감이며 정부로서도 그 완전 실시를 위하여는 노력하고 있는 바인데 금년도에는 본관이 수립한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의 제1차 연도로서 적령 아동의 95퍼센트와 20여 만의 전년도 이전의 미취학아동을 합하여 76만의 아동을 신규로 취학시켜 총학생수가 270만에 달하게 되었는데 이는 작년도에 비하여 44만 명의 학생 증가인 것입니다. 이 상태로만 6년간 계속한다면 6년 후에는 취학률로 보아서 의무교육은 일단 완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당초 예정은 의무교육 6개년 계획안을 국무회의에 부의하여 그 의결을 얻어 거족적인 태세로써 충분한 재정적 기반 후에 실시하려는 것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정에 의하여 국

무회의의 의결을 보지 못한 채 의무교육 6개년 계획 제1차 연도 분을 실시하게 되었음으로 재정적으로 큰 곤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중에는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명년도부터는 본 계획이 일층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재정적 기반이 불충분한 가운데서 의무교육 6개년 계획 제1차 연도 분을 강행하게 되었다 함은 전기한 바인데 금년도에 있어서도 극빈아동의 취학을 완성하기 위하여 신규 취학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7만여 명의 아동에게 유니셀 우유죽을 급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교육 6개년 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채택되고 목하 제정 수속 중인 교육세법안과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법안이 공포되면 국민학교의 사친회비 부담은 해소될 것이며 극빈아동의 학비 보조는 더욱 확대 강화될 것입니다.

3. 교육재정 확립책 여하?

답 이 의원은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치단체의 재정 확립책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행의 법제도상으로는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국민학교는 교육구와 특별시 및 시의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자치기관이라 총칭함)가 설립 운영하기로 되어 있으며 이에 요하는 경비는 교육자치기관에서 징수하는 교육세 수입과 국고에서 보조하는 초등교육비 보조로써 충당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며 현재의 4,054교, 43,089학급, 270만의 아동교육을 유지 운영하기 위하여는 금년도(15개월)에 139억 환의 자금이 소용되는 것이나 본년도의 예산에 계상된 액은 교육세 수입 24억 환(토지소득세 환부금 11억 환, 호별세부가금 6억 9000만 환, 특별부과금 6억 2000만 환)과 국고보조 37억 환(교원봉급보조 30억 6000만 환, 재정부족 보조 6억 9000만 환) 및 교원부양가족양곡대 10억 6000만 환(총무처 예산 계상)을 합하여 72억 환에 불과하므로 50여 억 환의 재정 결함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교육법에는 제70조에 국민학교 교원 봉급 전액을 국고가 보조하는 외에 교육법 제71조제2항에서 의무교육의 재원이 부족한 교육구, 시에 대하여는 그 부족금액을 국고가 보조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

다. 전기한 바와 같이 교육세입은 많지 못하므로 거액의 재원부족이 생기는 것이나 현하 국가재정이 팽박하고 있음과 재정부족 보조 산출에 관한 법적 기준이 결여되어 있음에 의하여 국고보조도 완전치 못하므로 방대한 재정결함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무교육 재정의 확립은 교육세 세입의 증가와 국고보조의 증액으로서만 가능한 것인데 본관은 의무교육 6개년 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교육세법과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법을 제정하려고 목하 제정 수속 중에 있는 것입니다. 교육세법의 세원은 현행의 호별세부가금과 특별부과금의 세원 외에 국민학교 사친회의 부담원을 일부 포착하고 국세 세원의 일부를 할양받아 이에 충당하려는 것인데 국세 세원의 대폭 할양은 현하 아국 재정사정으로 보아 어려운 실정에 있을 뿐 아니라 단일세인 교육세의 세액이 과다하여서는 징수에 애로가 많을 것이고 또 특별시, 시 교육구 상호간에 그 수입차가 현격하여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할 우려도 없지 아니하므로 교육세 수입은 교육인건비를 제외한 총의무교육비의 60퍼센트를 확보할 수 있는 정도로 교육세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고의 의무교육비 재정부족 보조에 관하여는 교육법 제71조제2항에 그 부족액을 보조하기로 되어 있으나 그 보조액 산정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예산사정 당국자는 예산을 삭감하기 위하여 학급당 수용인원의 증가, 교원 정원의 삭제, 세출항목의 삭제, 세출단위비용의 삭제 내지는 교육세 수입의 과대평가 등으로 재정부족 보조액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재정부족 보조는 형식적 보조에 불과하여 재정결함을 보전할 수 없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세출의 항목과 단위비용 및 세출입의 산출 방법을 명백히 하여 교육자치기관의 재정결함을 완전히 보전하려는 것인데 이상의 양 방법이 제정 실시된다면 의무교육 재정은 확보될 것이며 국민학교의 사친금 부담금 문제는 해소될 것입니다.

#### 4. 각종 교실 교사 재건 복구 대책이 어떤가?

답 학교교육시설은 사변 중 22,954 교실이 소

실 파괴되었음은 이 의원이 조사하신 바와 같으며 그중 지금까지 4,645 교실은 완전 복구된 것이나 매년 상당한 학급이 자연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급도 2만여 교실이 부족되고 있으며 우선은 가교사, 대용교실 등을 사용하여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나 그 완전한 복구에는 300여 억 환의 자금이 필요한 것이고 그 대부분은 국민학교 교사에 속하는 것임으로 현하의 교육구와 시교육위원회의 재정 실정으로는 그 전반적인 복구가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의 교육구와 시교육위원회의 예산에 계상된 교육시설 신영비는 약 12억 환에 불과한 것인데 이 정도로는 긴급을 요하는 노후 교사의 수축과 운크라 및 미 제8군 민간원조로써 할당되는 재건자재의 건축비 충당에도 부족하게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전제교사 복구재건사업은 외국 원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방금 운크라의 교육 원조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재건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그 원조 획득에 노력하고 있는 바인데 제1차 연도인 4287년도 계획으로는 당초의 할당예정액이 대폭 삭감되어 1,271 교실의 수축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미 제8군의 민간원조로써 진행되는 많은 재건자재를 획득(獲得)하고 있는 중인데 금년 6월 20일 현재로 130교실이 건축 완료되었고 1,087 교실이 건축과정에 있으며 약 1,000여 교실이 착착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중에는 외자 원조로써 3,500여 교실이 복구될 예정에 있으며 명년도인 4288년도에는 교육복구비를 대폭으로 계상하게 될 것이라는 운크라 당국의 시사가 있으므로 미 제8군의 민간원조의 신규 획득의 증가와 더불어 당부의 교육재건5개년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 5. 실업교육의 치중 교육방법 여하?

답 인문 3, 실업 7의 비율로 실업교육중점주의의 문교정책을 세웠으나 현하 국가초비상시의 적자재정은 자연 실업교육시설의 불비를 초래하는 동시에 실업교사 확보난에 겹하여 이조 이래 송문양반정치는 산업정책을 전연 도외시하여 산업 부면에 종사하는 노무자를 천시하든 폐풍이 상급 잔재하여 일반 향학

도의 경향은 실업 계통보다 인문 계통을 지망하는 자 허다한 관계상 계획 그대로 실천치 못함은 대단히 유감이나 당국자의 부단한 노력으로 여상의 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 대 5, 즉 반반의 성과를 얻었으며 앞으로 좌기 사항을 강력 추진하여 계획 완성을 기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1. 교육기관의 정비 개선

일반 학교의 경향이 상급학교 준비 교육화하는 차제에 지방 실정에 따라 전체적으로 공업, 수산업, 농업, 상업 등 순위로 실업을 치중하되 실업 7, 인문 3의 비율에 의하여 조장 육성시킬 방침임.

#### 2. 실업교육 시설 강화

생산교육을 강력히 추진시키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교 시설(실험, 실습기구, 기계, 기타)을 국고보조 또는 외국 원조에 의한 계획을 적극 추진 중에 있는바 근소한 재정 실정하에 있어 실업계 대학과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중점 시설을 진행 중에 있음.

#### 3. 실업교사 확보책

실업계 대학교수, 고등학교(사범 포함) 실업교사, 중학교 실업교사 등 부족 인원 약 6,000여 명에 대한 확보 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가) 실업계 중학교원 양성소의 교육 내용을 혁신 강화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나) 대학졸업예정자에게 군사집단훈련을 실시한 후에 실업계 대학 출신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와 협의하에 후방예비역 조치를 취하고 고등학교 실업과 2급 정교사로 확보할 예정임.

(다) 실업대학교수 부족 대책을 위하여는 국내에서도 양성함은 물론이러니와 이공계 인재양성을 위하여 국비 또는 외국 원조금으로 가능한 한 우선 해외 파견을 계획하고 있음.

#### 4. 실업교사 재교육 강화

실력 부족한 교사를 위하여 질적 향상과 생산기술 훈련 및 정신훈련을 적극 추진할 방침임.

#### 5. 실업교과 내용 개선

생산기술 실천을 중심으로 기술 및 경영방침을 체득케 하여 실사회에 적응케 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지향코자 함.

#### 6. 실업고등학교 졸업생 진학 대책

(가) 실업계 대학 모집정원 50퍼센트는 실업학교 출신자 중에서 선발함.

(나) 실업, 인문 고등학교 출신자 별로 입학시험 과목과 내용을 달리하여 선발함.

(다) 실업고등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무시험으로 입학을 허가할 방침임.

#### 7. 실업계 학교 출신자 처우 대책

(가) 실업고등학교와 실업대학 출신자로서 중요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산업요원으로써 예비역으로 돌려 징소집 보류를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예의 절충 중임.

(나) 비상시에 실업계 학교 졸업자를 징소집할 시는 각자의 전공 기술을 고려 배치토록 요청할 예정임.

#### 8. 실업고등학교의 병설 중학교 대책

좌기 사유로 지방 실업고등학교에 병설 중학교를 설치할 예정인 바 그 이유로서는

(1) 입학지원자 수의 감소와 질적 저하 방지  
가. 인문 고등학교에 집중함을 방지

나. 실업 중시의 정신을 함양

다. 입학 당시 학부모의 경비 부담을 경감

(2) 실업고등학교의 원활 기도

가. 교재 급 시설의 효과적의 활용

나. 교사 교류의 용이화

다. 인건비의 절약

#### 9. 실업교육 장학진 강화의 건

중앙과 각 특별시·도에 장학위원 및 장학진을 강화하여 실업교육을 추진시킬 방침임.

#### 10. 실업교육 자문기관 설치

실업교육의 자문기관으로 각 도 및 중앙에 각 실업교육위원회를 두어 실업교육에 관하여 연구 검토케 할 예정임.

#### 6. 사회교육 실시 방안 여하?

답 (1) 문맹자의 조기 일소

국민대중의 민주적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교육사업의 활발 원활한 추진을 기함에 있어서는 문맹자의 조기 일소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기본과제인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비추어 다년간 이에 치중 추진하여 오든 바이나 정부에서는 이 문맹 일소교육을 중요 국책으로 결정하고 문교·내무·국방의 3부가 합동하여 지난 3월 18일부터 전국 각 부락에 84,190개소의 국문

교육반을 설치하고 거족적으로 강력히 실시하여 19세 이상의 문맹 국민 총 수 2,689,694명 중에서 1,972,115명의 국문교육반 수료사(수료고사 합격자)를 내었으며 이번 하기에 있어서는 전국의 고급반 귀향 학생으로 하여금 이들 수료자에 대한 보충교육과 아울러 잔존 문맹자에 대한 기초교육을 적극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바이며 금년 동기에 있어서는 관계기관이 총동원하여 잔존 문맹자 약 1,000,000명(12세 이상의 문맹자 총 수 1,173,144명 중에서 로쇠 또는 불구자를 제외한 전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문맹자 일소의 완필을 기할 계획을 세우고 관계 예산을 추가조치 중에 있으며 문맹자 일소와 병행하여 초등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소년층을 공민학교에 수용하여 3년간의 초등 공민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방침을 세우고 현재 367,782명이 취학하고 있으며 매년마다 200,000명의 신규 취학을 적극 도모하여 국민 기초교육의 철저를 기할 계획임.

#### (2) 성인교육 지도자 양성

문맹자 교육을 위한 지도자 즉 국문교육반 교사는 그 전부를 각급학교의 교사와 유능한 일반인을 협조토록 동원하고 있으며 시·군, 읍면의 지도자 양성(재교육)은 예산 관계로 말미암아 전면적인 실시를 계획하지 못하고 있는 바이나 금년에 있어서는 시·군 지도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웅크라의 기술 및 재정 원조에 의한 성인교육 지도자 양성계획을 적극 추진 중에 있음.

#### (3) 사회교육 및 농민교육

기초교육 이상을 받은 모든 국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종합적인 사회교육(국민재교육)은 현재 성인 학교에 의하여 그 실시를 개시하고 있으며 이의 확장을 적극 기도하여 성인 대중의 직업상 사회적 지위의 증진과 생활의 향상 윤택을 기하는 한편 시청각 교재의 도입 활용에 의한 국민대중의 생활교육과 정신계몽을 전국적으로 강력 실시할 계획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농림교육은 대부분의 고등공민학교에 의하여 극력 실시하고 있는 바이나 정규의 중등 교육기관이 충분하지 못한 우리나라 현 실정과 재정난 등

제반의 애로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 더욱 교육내용의 쇄신과 재정의 확립을 도모하여 농촌 재건의 실천적인 중견인물 양성에 주력할 것이며 농민대중의 생활교육과 민주계몽을 목적으로 농촌간이문고 설치를 계획하고 계몽서적 300,000부를 배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몽서적 배부를 적극 조치하여 농촌간이문고의 충실을 기할 계획임.

#### (4) 사회교육 관계 법령의 제정 준비

사회교육 실시에 대한 재정의 법적 근거 확립과 사회교육기관과 시설의 확장 및 체계화를 기하여 더욱 강력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관계 법령의 제정이 절실히 요청됨에 비추어 그 초안을 작성 완료하고 조속히 국회에 회부할 계획임.

7. 각급학교의 잡부금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장차 문교부장관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답 사친회의 부담금은 교육계의 암이며 의무교육의 운영을 저해하는 중대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사친회 부담금 문제의 해결 없이는 교육의 정상적 운영과 의무교육의 완성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관은 취임 이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사친회 부담금 문제의 해결은 국민학교의 의무교육이 시급하다 하여 국민학교만 분리하여 해결될 수는 없고 중·고등학교 사친회와 대학후원회의 부담금과 일관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대학후원회 부담금과 후생비가 있는 한 중·고등학교 사친회 부담금과 후생비 지급을 억제할 수 없고 중·고등학교 교원이 과분한 후생비를 받고 있는 이상 국민학교 교원이 사친회 후생비의 지급을 받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는 까닭입니다. 사친회 부담금은 교육재정의 결함을 보전하는 방편으로 생긴 것이므로 그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교육재정의 확보로써만 가능한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 일지라도 강력한 통제와 지도로써도 어느 정도의 해결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본관이 구상하는 바 그 해결안을 피력하겠습니다.

#### 1. 국민학교

국민학교 재정은 전기한 바와 같이 교원 인건비는 전액을 국고가 부담하고 학교수용비와 시설비는 원칙적으로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되 부족이 있을 때에 한하여 국고가 보조하기로 되어 있음으로 국민학교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봉급을 인상 지출하는 동시에 교육세 수입과 재정부족 보조를 증가하여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민학교 교원의 보수로서 부양가족 1인당 1일 3함의 양곡 배급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였던 것인데 상급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이 공포되지 못하여 국가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월 2600환 내지 5000환의 봉급밖에 지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관은 교육공무원보수교정을 조속히 공포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목하 법제처에서 심의 중에 있는 교육세법과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법의 제정을 촉진하여 공포 실시함으로써 자체수입과 국고보조를 증강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하려는 것인데 여사히 되면 국민학교 사친회 부담금의 징수는 철폐될 것이며 국가가 지급하는 봉급으로서 생활유지가 어려운 지구에 있어서는 교육자치기관으로 하여금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2항에 의한 교재연구비를 지급하게 하여 그 부족을 보충하게 할 것입니다.

## 2.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비는 설립자인 특별시와 도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은 빈약하여 그 경비를 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교원 봉급 반액이 문교부를 통하여 보조되는 외에도 상당한 금액이 특별시와 도에 대한 일반재정 보조에 포함되어 내무부를 통하여 보조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그 보조금을 관장하는 관청이 다르므로 인하여 그 운영의 원활을 결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에 유용되는 사례가 허다하여 중고등학교에서 납입하는 수업료 등도 특별시에서 일시 유용하여 적기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여 중고등학교 재정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으므로 본관은 교육법 제71조제1항과 제22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 장리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교육기관에서 납입한 수업료 등이 유용되지

않고 적기에 교부되도록 하는 조치를 연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사히 하여 중고등교육재정의 질서를 우선 확립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일종의 평형교부금 제도를 창설하여 수업료 기타의 자체수입으로도 부족한 분은 국고나 특별시 및 도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으나 그것이 곤란하다면 사친회비 부담원의 일부를 포착하여서 수업료를 대폭으로 인상하여 자체수입의 증가를 기도하도록 하고 사친회비 부담은 전적으로 폐지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급으로서 생활유지가 곤란한 지구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2항에 의한 교재연구비를 지급하여 그 부족을 보전하게 할 것이며 학교수용비와 시설비의 부족은 국고보조 및 특별시·도 일반회계전입금의 증가 또는 수업료의 인상으로써 보전될 것입니다.

## 3. 대학 기타의 국립학교

국가재정이 팽박한 현하에 있어서는 역시 수업료를 대폭으로 인상하여 전부 공식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사친회비나 후원회비의 부담을 철폐시켜야 하겠고 교재연구비나 연구수당 기타의 수당을 증가하여 봉급으로 부족한 생활비의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제 조치는 관계 부처와의 합의를 얻거나 법적 조치를 필하지 않는 한 실시 불가능하므로 조속한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8. 군 기관 사용교사 반환책 여하?

이 의원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금 군 기관에서는 2300여 교실을 징발 사용 중에 있으며 사변 중의 피해로 우심한 교육시설의 부족은 더욱 심하게 하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관은 군 사용 교사의 반환을 위하여 부단히 국방부장관과 절충하고 있어 일부 반환을 보고 있는 것도 있어오나 작전상의 제 사정으로 그 전반적인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상공부 장관의 응답서

문1. 정부 단독적 시책을 피하고 사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이를 감안해서 정책을 수립할 것.

답 시책에 있어서는 사계의 권위 있는 과학자,

경제인, 실업인 등을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문2. 무역정책의 간소화를 기할 것.

(1) 코타제의 간소화 내지 폐지할 용의 여하?

답 현재 실시 중인 민간무역수출입계획에 있어서는 국내 공업의 보호 육성상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도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외환의 절약에 도모하여 불급한 물자 도입을 억제하고자 필요한 수개 품목에 한하여 코타를 책정하고 있으며 기여 품목에 대하여는 전연 코타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타 책정 품목을 열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 고마대, 분철, 배터리설 및 동용재, 무연탄, 전기동, 정연가마니

수입 …… 양곡 및 동 조제품, 설탕, 호마아연화, 향료, 염산, 신문용지, 감광지, 사진용 필름, 외국영화 작품

(2) 현재 10여 종목의 외환이 설치되었는데 가급적 단일화할 것.

답 외환의 단일화에 대하여는 예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는 위축 일로에 있는 수출산업의 진흥상 수출불(弗)의 우대 특혜외환제도 등으로 외환의 단일화는 당분간 지난한 바 있을 것 같으나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3) 불(弗)론 제도를 폐지할 것.

답 불론 제도는 그 취지가 환화를 회수하고 중요생필품 내지 필수품의 제조원료 원자재를 도입하여 경제안정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상급도 불가의 속등(續騰)을 시현하고 있는 현금에 불론 폐지는 물가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케 될 것임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새로운 시책의 구현으로 종전의 외화 방출의 제도를 시정하는 것이 긴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수출산업의 진흥을 감안하여 수출실적업자에 대부하고 있는 간접적인 보상제도를 직접적인 보상제도로 개정할 것과 실수요자에 대한 대부에 있어서는 도입물품을 가일층 엄선하여 외화를 중점적으로 할당하여 대량 도입함으로써 물가의 저락을 기하는 것인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목하 예의 검토 중입니다.

(4) 경제시책이 변화될 시는 과도적 조치를 취

할 것.

답 경제시책이 변화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함은 물론 실시 단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여유기간을 설정하고 여유기간 내에서 일반에게 주지시킴으로써 일반 업자에게 불의의 손실을 초래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일부 업자의 독점을 방지하여 기회균등을 항시 유의할 것입니다.

문3. 대국영기업체의 불하를 촉진함이 여하?

답 대국영기업체의 불하에 관하여는 현재 각 관계부처에서 그 불하 방안에 대하여 연구심의 중에 있습니다.

문4. 국영기업체의 노무자 임금 미불 이유 여하?

답 대한석탄공사의 미불 노임 총액 329,764,676환은 그간 지급에 노력한 결과 4287년 6월 분까지 170,346,516환 17전의 미불 잔고를 보게 되었으나 해 공사가 노임을 미불한 원인이 판매탄가를 실 생산원가에 미급하는 법정탄가로 억제하였음에 있으므로 현 탄가를 개정하도록 조치 중에 있으므로 따라서 이 미불 노임을 지불하기 위하여 산업은행에 운영자금 600,000,000환을 융자하도록 조치하여 그중 200,000,000환을 4287년 8월 15일까지에 긴급히 융자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자금이 융자된 연후에는 미불 노임이 해결될 것이고 현 탄가가 개정되면 항구적으로 노임 미불은 없을 것입니다.

사회부 소관

문1. 구호양곡의 변질 부패 원인의 규명과 장래의 대책 여하?

답A 원인

1. 금년 4, 5월에 공하여 KCAC에서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별지 모선분 구호양곡 8,338,840키로의 정맥이 곡층 피해가 심함을 하역 중 발견하였음.

2. 농림부 KCAC 및 대한금련 합동감정 결과 본건 양곡이 한국에 입하하기 전에 사고가 발행된 것임을 인정하였음.

「참고」 본 양곡은 미군 당국에서 포로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수입해 온 대맥인바 극동에 있어서는 양곡재고 잉여량을 이용하고자 본래 목적을 변경하여 구호양곡으로 전용하려고 KCAC에서 도입

- 한 것임.  
 B 대책  
 1. 입하분에 대하여는  
 일본국으로 반송하는 방법  
 구충 후 공매 처분하는 방법  
 구충 후 정상품으로 재조제하여 배급하는  
 방법 등을 농림부에서 KCAC 당국에 제시

- 하고 있으므로 그 회신에 따라 처분 방  
 침을 결정하게 될 것임.  
 2. 장차 총해 양곡의 입하를 방지하기 위하  
 여 농산물검사소, 농림부, 금련, KCAC의  
 대표로서 검사반을 조직하여 한국으로 오  
 는 모든 양곡을 하륙 전에 검사토록 할 것  
 임.

「별지」 총해구호양곡 입항·상항

입항년월일	입항지	모선명	종곡	포장	단위	수량	기부
1954. 4. 29	군산	을지파	정맥	지대	20K	1,300,000K	재고중
1954. 5. 11	"	부산호	"	"	"	1,800,000K	"
1954. 5. 11	"	천광호	"	"	"	2,000,000K	"
		소계				5,100,000K	
1954. 4. 24	포항	일진호	정맥	지대	"	824,840K	6.9.조작 방출함
5. 8	"	A-GORAN	"	"	"	1,317,000K	"
"	"	SERHUS	"	"	"	1,097,000K	"
		소계				3,228,840K	
총계						8,338,840K	

문2. 난민정착사업계획을 문함.

답 가동능력이 있는 난민 중 영농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논경, 축산, 기타 생업을 영  
 위케 하고 자립자랄토록 난민정착사업을 추  
 진한바 그간 복귀한 245,097세대 복귀 불능  
 농민 9,500세대 합계 254,597세대를 정착시  
 키고 금춘에는 갱히 38 이북 수복지구 농민  
 15,000세대를 포함한 36,800세대를 정착시  
 키고 있으며 주택재건자재, 농기구, 종곡, 비  
 료, 농우 등을 배정하였음. 금년 중 이 앞으  
 로 35,000세대의 난민을 정착시킬 계획인바  
 금후의 정착사업은 영농과 병행하여 수공  
 업, 염전, 기타 생산사업 방면에 주력할 방  
 침이며 유엔 기관으로부터 그 소요자재 원  
 조를 획득코져 적극 추진 중에 있음.

문3. 구호물자 중 모포, 광목 등의 일본제품이  
 많으니 이를 방지하는 도리는 없는가?

답 사회부에서 책정된 구호물자 요구량에 대하  
 여는 기획처 당국과 유엔 측 구매관계관이  
 협의하여 필요한 물자를 발주하게 되는 것  
 인바 그간 일본제품이 도입된 일도 있었으  
 므로 금후는 구호물자뿐 아니라 여하한 원  
 조물자도 일본제품이 불량한 고로 일본국은  
 그 발주국에서 제외하도록 정부에서 강력히  
 유엔 당국과 절충 중임.

문4. 대한군경원호회는 자체 직원의 원호기관  
 밖에 되지 못하는 현상으로 그 본래의 사명  
 달성에는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데 이에 대  
 한 대책 여하?

답 금차 전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방대한 수의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군경원호사업은 국가  
 재정과 행정력만으로는 완벽을 기할 수 없  
 으므로 민간의 원호 의욕을 앙양함과 아울  
 러 국민 각자에게 응분의 원호 의무를 과하  
 여 원호기금을 조달하고 이로서 정부원호사  
 업의 미급한 부분을 보충토록 하고저 반관  
 반민의 조직체인 대한군경원호회를 창설하  
 고 차를 지도 조성하여 온 바이오나 그간의  
 실적을 보건대 원호대상자들에 대한 직업보  
 도 공장 및 동 교육시설의 설비 운영, 실명  
 자의 특별수용 보호, 학비 보조, 결혼 장려,  
 기타 원호사상의 고취 활동 등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으나 이상 제 사업은 확고한 재  
 정적 기초의 수반으로써 더욱 발전을 기약  
 할 것이로되 원호회비의 증수 면에 있어서  
 행정기관과 유기적인 연계가 결한 바 있어  
 서 그 성적이 부진하므로 금반 원호의 기구  
 를 간소화하고 인건비를 절약하는 일방 중  
 앙의 본부로부터 도·시·군·면에 이르기  
 까지 행정기관과 일층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완비함으로써 회부 증수의 정확과 능률을 향상시켜 본회가 지닌바 사명을 충분히 발휘케 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코저 함.

문5. 근로기준법이 이미 공포 실시된 지 오래이나 법이 잘 실천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 여하?

답 근로기준법은 작년 5월 10일자로 공포되었고 공포일로부터 90일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금년 8월 8일을 기하여 시행하게 된바 이 90일의 기간은 소위 법 시행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두는 것으로 그 준비로서는 대체로 두 가지를 들 수 있음

그 일은 법 시행에 필요한 제 부속규정의 정비인데 법이 공포되자 마침 정부는 환도를 단행하게 되어 이에 90일의 기일은 소비되었고 근로기준법은 본시가 근로자의 직장생활의 모든 분야를 적용범위로 하는 것인만큼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각 기업체의 현 실정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였으므로 부속규정 중 동법 시행령을 금년 4월 7일자로 공포하게 되었고 그의 규정은 성안되어 심의 중에 있으므로 불원 정비될 것임.

이는 산업시설의 운영방법의 개선인데 근로기준법이 공포됨에 따라 각 사업체는 종내 무계획적이던 운영방법을 법에 의하여 개선하여야 할 시기에 당면하였던바 이 개선에는 시설의 증설 등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야 할 것이 대부분이며 개선이 달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의 여유를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이 운영방법의 개선은 전개의 복구와 보조를 같이 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므로 정부로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입각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적극 추진하여 근로기준법이 목적하는 근로자 보호의 실효가 단시일 내에 거양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하 부분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면

#### 1. 임금문제

저반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불 문제로 물의가 자자한데 법이 공포된 이래 임금 지불 성적이 불량한 기업체에 대하여는 수시로 직원을 파견하여 그 실정을 조사하여 법의 위반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즉시로 이행하도록 경고하여 왔으나 임금 체불 기업체

는 대한석탄공사를 위시하여 주로 국영 또는 귀속기업체로서 특히 대한석탄공사와 같이 전액 정부 출자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체는 자본의 증자 또는 용자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며 귀속기업체 등에 있어서는 이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부 시설을 매각하여야 할 사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임. 이와 같이 본법의 성급한 강행은 여러 가지 난관이 없지 않으나 당부로서는 관계부와 연락하여 이들의 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바임.

#### 2. 근로시간, 안전과 보건문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8시간 노동의 원측은 착착 법대로 개편되어 가고 있음. 그러나 상금 시간, 안전, 보건 등의 조치가 전반적으로 개량되지 않고 있는 사업체가 있음은 예를 들면 근로시간 개편에 따르는 종업원의 증원에 소요되는 기숙시설의 증설 등 전기한 바와 같이 불소한 자금의 조달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것임.

따라서 정부는 각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체득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법에 규정된 기준에 의하여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바임.

#### 3.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문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을 사업별 또는 직종별로 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역시 현실에 부합하는 것을 책정하려면 현실적인 물가, 임금, 생활비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장래의 추세를 파악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현재 사회부는 이들의 자료를 수집 중이며 또한 관계 직원 및 이 방면의 권위자에게 위촉하여 연구하고 있는 바임.

문6. 노무동원이 법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는바(기한, 1개월, 전불금 노임지불 등) 이를 어찌할 것인가?

답 근로동원에 관하여는 작년 7월 본법 시행당초부터 피동원자에 대한 법정근로조건 이행 문제에 관하여 미 제8군사령부와 빈번한 교섭을 거듭하는 동시에 법의 규정을 준수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아직도 8군과의 관계 및 재정사정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이것이 충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임.

첫째 동원기간 문제에 관한 미 제8군 측 견해에 의하면 군 관계 작전 동원에 있어서 신체검사, 단체수송, 편대 배치, 노무자의 작업기능 훈련 등 기간을 고려할 때 현재의 법정기간 3개월은 무리가 많으니 이를 6개월로 연장하여 달라는 것인바 여러 가지 실정을 조사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과반 이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회부한 바 있으며 다음에 피동원자의 임금에 있어서는 일당 100환 중 미 제8군 측에서 부담하는 45환은 현지 부대에서 직접 본인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에서 부담하는 55환과 1개월분 선불 임금은 이를 적기에 지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국가재정의 형편으로 지연이 불가되니 이 애로 타개에 있어 관계 부처에 대하여 긴급한 영달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극력 요청하고 있음.

보건부 소관

문1. 전국 무의면 수와 무의면에 대한 시설과 배치상황의 대책 여하?

답 4286년 말 현재 통계를 보면 전국의 무의면 수는 706개 면에 달하나 그중에서 대부분은 한의사가 배치되고 있고 실제로 의료업자가 전연 배치되어 있지 않는 무의면은 실로 217면에 불과합니다.

일편 4286년 말 현재 의사의 등록상황을 보면 총 의사등록 수는 7102명 중 공무원 관공립 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요원 및 군 기관에 복무하는 자 3,195명, 사변 이후 행방불명자 및 미등록자 1,189명을 제외한 약 2,700명이 실지 일반 민간 의사로서 개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군의관 소집 연령을 초과한 40세 이상의 의사로서 자녀 교육 관계 기타로 도시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외에 현재로는 의사만을 강제로 동원하여 배치할 수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보건부로서는 우선 의료요원의 인적자원 확보에 있어서 군의 요인원과 민간의료 요원을 확보하는 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즉 한지 의료업자의 지역 변경에 있어서는 무의면을 대상으로 허가하고 있으며 무의면에 대하여는 운크라 및 적십자에서 제공된 이동진료

차를 각 도에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각 의과대학, 농촌위생연구소 같은 기관에서 무의촌 진료를 실시하는 것을 주장하는 일방 앞으로는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보건진료소를 증설할 것이며 또 현재 소집 중에 있는 의료업자의 군복무가 해제되는 날에는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간이예방접종 실시소 등을 설치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무의면

도별	의사 없는 면	의료업자가 없는 면
경기	74	23
충북	51	18
충남	60	24
전북	110	37
전남	132	9
경북	107	34
경남	124	41
강원	47	37
제주	1	0
계	706	217

◎ 등록의사 수의 내역

보건소장	490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1,205
일반 개업의	2,718
군의관	약 1,500
기타 미계출납치자, 행방불명	1,189
단 대한민국 등록수	(5,662명)

문1. 사창의 발호와 성병 관리에 대한 대책 여하?

답1. 한국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군정법령 제70호 공포를 보게 됨에 공창의 제도는 폐지되었음.

답2. 사변 발생과 유엔군의 전투 전개로 인하여 많은 외국 군대가 국내 도처에 주둔하게 되었음으로 자연적으로 발생을 보게 된 각종 접촉업자는 필연적으로 성병 만연을 초래하게 되어 풍기문란과 국민보건의 위협을 일시에 유발하게 된 것임. 이러한 공연한 사실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치안 문제를 중심으로 한 내무 당국의 행정조치에 의한 소위 위안부 집단지역을 설정하게 된 바 있으며 주둔 유엔 당국과도 그 설정지역에 대한 출입 문제의 단속의 강화를 실시

중에 있음.

답3. 위안부를 위시한 땀사 등 접객부의 종별 분류 및 그 등록 및 정기검진은 경찰 당국과 항상 밀접한 연락하에 엄격하게 보건부 당국에서 시행하는 중이나 이병자 중에는 의식적으로 정기검진을 기피하는 자도 있으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전연 없는 일부 부녀자 소위 밀창이 도처에 발호하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그 성병 관리상의 견지에서 한미합동경찰진용이 무단히 발동 취체하는 바이며 이러한 위반자로 적발된 부녀자에 대한 검진은 보건 당국에서 상시 그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형편에 있음. 고로 사창에 대한 취체는 주로 치안 당국의 분임 사무인 동시에 그 궁극의 원인이 사회생활의 곤경에 유래하는 것인 즉 사종부녀자 자신 및 주위 환경을 사회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후생 대책을 강력히 수립 추진하여서 사회교화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답4. 치료는 원칙적으로 예방적 치병에 치중하고 있으며 정기검진 시마다 건강증을 교부하고 유역자에게는 치유될 때까지 이를 보류하여 치료를 실시한다. 치료비는 원칙적 무료이나 KCAC 혹은 보건부 배부 약품이 부족할 시는 약가의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그 외에 정기검진은 위안부 매주 2회, 땀사는 매주 1회, 접대부는 2주 1회씩 실시하고 이 건강진단비로 매월 100환을 징수하여 해당 성병진단소 유지비로 충당한다.

답5. 선전계몽

매 사업으로 성병진료소 주치병명을 망라하여 성병행정과 현대 성병을 예방학술회 개최 지역별로 위안부 및 접대부를 집합하여 성명에 대한 강연회 개최 등임.

문1. 보건진료소 인원 및 설비 부족에 대한 대책

답 보건진료소는 보건부가 운영하고 있는 것 490개와 유엔이 일선 및 후방지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합하여 5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본래 보건부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유엔에서는 약품, 기재를 부담하고 현지 주민들은 운영상 필요한 경상비와 의료요원의 생활부조를 부담토록 계획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발족한 이래 전란 중을 통하여

이재민 구료방역 사업에 남긴 업적은 체언을 불요하는 바이나 그 중에는 왕왕 부진상태에 있는 진료소가 없지 않은 현상입니다. 물론 인구 10만을 단위로 한 본 사업이 원만히 운영만 된다면 무의촌과 같은 문제는 일소될 것입니다마는 부진하는 주요 원인은 첫째로 운영난 문제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정부, 민간, 유엔 3자가 공동보조를 취해서 협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왕 현지 주민의 이해와 협력의 결여로 진료소가 유명무실하게 될 때도 있고 심각한 운영난에 봉착하는 일이 있음으로 이런 지역에 대하여는 지도계몽을 하여 본 사업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력을 하도록 협력 중입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요원 확보와 질적 향상 문제입니다. 이것을 위하여는 특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분이 확보되도록 하여 안심하고 직장에서 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적 향상을 위하여는 공중보건원을 창설하여 요원 양성을 위해서 전폭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약품과 시설기재의 공급 문제인데 이것은 유엔에서 책임을 가진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연락하여 최대한 양의 도입과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의 약품기재 도입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연도별	도입액(미불)
4283년	9,500,000
4284년	7,500,000
4285년	7,000,000
4286년	6,500,000
4287년	3,500,000

문1. 결핵성질환 근절 대책

답 국민 전체의 개방성 결핵환자 수는 약 130만을 산하고 특히 청장년층에 이환율이 우심하여 국민 전체의 보건 향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불시라 국방에 미치는 영향역 지대함으로 결핵성질환 근절이 초미지급 무임은 다시금 체언을 불요하는 바이나 결핵성질환은 원래 만성병으로 단기간 내에 발본색원하기는 불가능한 질환으로 그의 대책을 강구하면 다음과 같다.

1. 보건교육의 철저를 기하여 전문의, 간호

원, ECG접종기술자의 양적·질적 확보와 일반 결핵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선전 계몽을 실시할 것.

2. 6·25 동란으로 인하여 파괴된 각 위생 시설을 복구하는 동시에 개방성환자와 격리를 목표로 병사를 설치할 것이며 현재 결핵 환자 병상 수는 극소이니 증설을 시급히 할 것.

3. 결핵예방사업으로써 ECG 접종과 X광선 집단검진을 전반적으로 실시할 것.

4. 현재 병상 수는 극소수임으로 개방성환자로서 입환 가료치 못하는 환자는 격리치료가 가능할 시까지 각 요양원, 중앙결핵원, 각 시·도립의원에 통원 치료할 것.

5. 행정기구를 강화할 것.(각 시·도·군에 이르기까지 기구를 증설하고 직원을 증원할 것)

6. 본 사업 추진에 원동력이 될 예산확보 여하가 결핵성질환 근절 대책에 좌우됨은 말할 것까지 없으니 충분한 예산조치가 있어야 할 것.

문1. 국내 약품 생산책(생약증산과 그 수급책 여하)

답 생약이 국민보건상에 미치는 의료적 가치의 중요성은 갱히 재론할 바 없거니와 현대 의약품의 주요 원료로 제공되어 국산 의약품 생산에 절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또 일면 광범 공업용 부분(단닌염료공업)에까지도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기지 사실인바 이 중요한 생약자원의 국내 수요량의 확보를 기도하여 6·25 사변 직전까지 국내에 3,804,439평의 생약식부면적을 용하고 예의 생산에 경주한 바 있었으나 양차에 공한 동란으로 인하여 그 확보한 면적의 60퍼센트(약 230만 평)가 황폐화 되었고 또 국내 생산약의 주요 생산지대인 전남, 전북, 강원 각 도의 산간지대는 치안이 확보되지 못하여 천연산 야생 생약의 채취는 물론이거니와 생약재배 생산이 중단 또는 감퇴되어 생약수급 면에 지장이 막심하였으나 시국이 안정됨에 따라 생약업자의 꾸준한 노력으로 작년도(4286년)에는 154만 근의 생약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국내 연간 생약 수요량은 330만 근으로 추상되는바 전기 생산실적으로 볼 때(생산

량 154만 근, 부족량 176만 근, 국내 수요량 540% 부족) 아직도 국내 수요를 충족하려면 앞으로의 상당한 노력을 요하오며 생산 재배상 기술 면의 지도책과 황폐화된 기존 묘포의 조속한 복구가 초미의 급선무입니다.

서상과 여한 실정으로서 이의 생약 생산상에로의 타개와 증강을 위하여 재배기술 면의 지도와 연구기관인

첫째 국영 생약시험장의 운영 강화를 도모하여 생약 생산상 유기적인 기술 면의 지도와 연락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 종자의 개량, 품질의 개선책
2. 과학적인 재배 및 능률적인 관리방법의 연구
3. 외국산 생약의 이식 재배의 연구 시작
4. 생약의 성분 연구, 추출 방법에 대한 기술 면에도 현대 과학을 구사해서 중요 의약품으로서의 가치를 발휘케 할 방침입니다.

둘째 민간 생약 재배화를 기도할 방침입니다.

농가의 부업으로서 생약 재배 및 천연산 야생 생약의 채취율을 고취시켜 대중적인 생산 증산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문1. 국내 생약 수급 대책

답 생산의 연간 국내 수요량은 약 330만 근으로 추정되오며 이에 대한 공급량은 불과 154만 근으로서 약 54퍼센트가 부족되어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있으므로 이의 타개를 위하여

첫째 생약 종자 개량

둘째 적지, 적종 재배에 대한 연구

셋째 외국산 약 이식 재배

넷째 생약 성분에 관한 연구

다섯째 생약 규격의 결정 등

5대 목표를 세우고 생약의 획기적 증산을 도모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일방 대외수출물자로서 외화 획득의 자원에 공하고 저 전북 이리시·군 외에 국영 생약시험장을 설치한바 이것의 운영의 강화를 도모하여 적극적인 생약의 기본적인 연구와 인적인 개량책을 추진하고 민간 생약 재배업자를 지도 육성함으로써 획기적인 생약 증산을 기하여 국내 수요의 기도하는 바입니다.

문1. 생약시험장에 대한 대책

답 본 시험장이 시도하는 바

1. 종자개량 연구
2. 적지, 적종 재배에 대한 연구
3. 외국산 생약 이식에 관한 연구
4. 성분연구 및 추출방법에 관한 연구
5. 생약규격의 결정 등

5대 목표에 대한 건전한 운영을 기함이 요청인바 이에 부수되는 기구의 정비, 기술요원의 확보와 사업예산 면에 주도한 대책이 긴절함으로 항시 이에 유의하고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문1. 부정약품 단속에 관한 건

답 의약품의 질적 향상과 불량약품의 횡행을 미연 방지하고자 거 6월 1일부터 동 말일까지 1개월간 경기도를 위시하여 지방을 순시, 취체 단속을 실시한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

1. 무허가 약품제조업자 적발 건수 11건  
압수 수량 3,500점
2. 무허가 부정 방역약품 제조업 적발 건수 5건  
압수 수량 4,670점
3. 외래부정품 적발 건수 36건

여사 적발된 업자 등에 대하여는 의법 처단할 방침이며 앞으로는 가일층 엄중한 단속으로써 약업계의 질서를 기할 것인바 일반 국민에게 대한 협력을 요망하여 마지아니한다.

교통부 소관

문1. 교통부 금년도 예산에 있어 23억 환의 차입이 계상되어 있는바 현재 차입 실적이 없는데 교통 운영을 여하히 하고 있는가?

답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교통부 예산은 87억 3100여 환인바 세입의 부족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르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전년도 기준의 최소한 경비를 산정하였으나 결국 23억 8173만여 환의 적자를 보게 되어 부득이 이것을 한국은행에서 차입하기로 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1/5반기 3개월의 실적을 살펴보면 정부의 긴축재정 및 통화사정으로 인하여 차입금은 전연 실현을 못 보게 되어 예산 집행은 일대 난관에 직면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1/5반기 예산 경리에 있어서는 법정 및 고정경비 등 절감 불

가능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부득이 대체로 공포예산의 5할 5푼 해당액으로 절감 실행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종업원에게 대여할 피복을 소요량의 반을 주리며 승무원, 합숙 완비 또는 승무원 여비 등을 증액치 못하는 종업원 처우상 암영을 초래하였을 뿐더러 객화차 수리의 불완전 대전·용산역을 위시한 주요 역사 타의 청사 복구의 불가능, 국산 침목 구입 절감, 기타 각 현장의 시설비품의 완비를 기할 수 없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철도 운영의 기반이 되는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출치 못하고 현재 근근히 열차를 운행하고 있는 형편이오며 시설의 적기 보수 불능은 장차 철도 운영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나 자재에 있어서 긴급 또는 시기적인 수요에 대하여는 2/5반기 이후 예산액을 조상 실행하는 등 실로 궁핍한 경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후에 있어서는 더욱 모든 세입재원을 총동원하여 증수에 노력함은 물론 차입금의 전입을 꾀하는 일방 조만간 증수를 위한 신채원개현책을 강구하여 현하 재정핍박으로 인하여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교통부 운영을 타개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문1. 역사, 청사 재건대책 여하?

답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교통시설 재건순위에 있어서 우선 열차를 굴려야 할 지상명령 때문에 선로를 우선 복구하고 다음은 차량정비를 위주로 한 관계로 건축복구는 다소 지연된 것입니다.

파괴된 건축은 1553만 9000평방미 중 39퍼센트이고 역사는 28만 4000평방미 407개 중 46퍼센트 169역이 파괴되고 청사는 15만 5000평방미 중 55퍼센트가 파괴되었습니다. 군 수송이 긴급하므로 우선 응급조치로 가설 복구로 역사 3만 5200평방미(피해율에 대하여 26퍼센트 완성), 청사는 5만 7000평방미(피해율에 대한 90퍼센트를 완성)를 완성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요 역사에 있어 역사건물 1만 7300평방미(13퍼센트) 4800만 환과 청사 건물 1만 6500평방미(28퍼센트) 6000만 환으로 일부 증설 계획이며 이미 일부 실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래 역사, 청사를 복구함에는 실로 거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소요자재를 원조로 도입하여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면목을 일신코져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1. 철도침목 대책 여하?

답 우리 철도의 부설된 침목 총수는 659만 6000정이올시다.

사변 이후 작년도까지 336만 정을 갱환하여 부패침목의 약 70퍼센트를 갱환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변 중 군사수송을 위하여 유엔군에서 부담 합계 271만 8000정이라는 막대한 침목이 도입되었으므로 중요 간선은 서행개소를 일소하여 실로 면목을 일신하였습니다. 일방 1953년도에 웅크라 원조로 30만 4000정을 도입할 것이며 아울러 국산침목 15만 정을 구입할 계획을 확립하여 간선을 제외한 지선 전부에 대하여 금년도 내에 갱환을 완료할 작정이며 이것으로서 전선을 통하여 서행개소를 일소하고 전 열차의 정상 운전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문1. 사고 방지 대책 여하?

답 철도사고라 함은 철도 운영에 가장 큰 암이 된다는 것은 고금의 철칙이며 철도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에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도 불변의 철칙일 것입니다.

원래 사고를 방지함에는

첫째 완전한 시설

둘째 충분한 인원

셋째 관계종업원의 숙련과 철저한 주의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현하 우리나라 철도는 이상 3요소에 하나 만족할 것이 없어 가끔 불의의 사고를 야기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일조에 손실케 하는 형편입니다. 본인은 다행히 현장에 장구한 경험을 가진바 있어 취임 이래 모든 공사와 자재를 열차 완전 운행에 치중하여 가급한 한도 내에서 시설의 개량을 실행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요원의 확보는 재정형편상 당분 불가능하므로 주력을 종업원 재훈련과 신상필별로써 항상 긴장한 근로태세를 촉구하여 인위적으로 사고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실천사항으로는

첫째 운전감찰관을 본부에 상치하여 수시로 현장을 순회케 하여 종업원을 훈련 감시케 하고 있으며

둘째 교통고등학교에 현 종업원을 교대로 입교시켜 6개월씩 재훈련하고 있으며

셋째 특별히 교양열차를 따로 제작하여 항상 현장을 순회 훈련하고 그밖에 규정 기타 기술에 관한 서적을 가능한 한 다량 제분하여 현장에 배포 재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문1. 서울 중심으로 구간열차 증발에 대한 계획 여하?

답 작년 환도 이후 통근통학열차 증발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한 결과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객차 사정으로 아직 태부족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목하 계획 추진 중에 있는 대용객차 200량 개조가 완성되는 대로 열차의 증발 및 증결이 실현될 것이며 이로서 9월 중에는 서울 중심의 교통난은 6·25 사변 전의 수송력으로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현행 구간열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	회수	기사
서울-천안	2	통근 1, 일반 1
서울-금촌	2	"
용산선	1	통근(용산-당인리)
서울-동두천	1	통근
서울-의정부	1	일반
서울-인천	7	통근2, 일반 5

문1. 철도건설공사 지연 및 공사금 지불 지연 이유 여하?

답 영암, 영월, 문경선의 철도건설공사는 최초부터 웅크라 및 FOA 원조에 의한 것으로서 그 공사용 중요자재의 대부분이 원조물자 도입으로서 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조물자의 순조로운 도입이 있어야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이나 원조물자 도입의 지연으로 공사를 중계할 수 없는 형편인지라 당 부로서는 가장 긴급한 자재인 세멘트, 화약 등을 타 기관으로부터 차용 공급함으로서 이를 계속케 하고 있으며 혹은 업자 자신이 구입 사용함으로써 위기를 면하고 있는 이 실정으로 공사의 지연을 초래한 사실도 없지 않았읍니다.

당 부로서는 관계기관과 일층 긴밀히 연락 추진하여 조속한 원조물자 도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 4287년 6월 말일 현재의 각 선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영암선 30퍼센트(6·25 전까지 23퍼센트), 영월선 40퍼센트(6·25 전까지 34퍼센트), 문경선 34퍼센트로서 원조물자와 자금이 순조로이 계속된다면 영암선이 4288년 10월 1일, 영월선이 4288년 7월 1일, 문경선이 4288년 4월 1일에 개통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관계를 본다면 영암선이 86년도에 440,473,842환, 87년도에 확정액 584,473,710환, 그리고 공사완성 시까지에는 금후 1,912,224,700환이 소요되며, 영월선은 85년도에 12,471,774환, 86년도에 195,113,690환, 87년도에 184,841,516환으로서 금후 공사완료 시까지 소요액은 658,326,700환이며, 문경선은 85년도에 25,189,904환, 86년도에 152,952,721환, 87년도에 86,096,516환이고 공사완성 시까지에는 금후 126,366,700환이 소요됩니다.

끝으로 공사금이 지불 지연은 철도건설공사는 428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서 792,501,821환이 성립되어 이에 대한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도록 결정되어 86년도에는 5억 800만 환의 전입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고 잔여 284,501,821환은 4287년도에 이월하였던바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에 의하여 연도 초부터의 재무부와 전입교섭도 여의치 못하여 근근히 6월 5일에 1억 환의 전입을 받아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의 기성공사대금을 지불하였고 다시 7월 2일에 1억 환의 전입을 받아 그 후 6월 15일까지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였으며 잔여액 8400여만 환에 대하여도 계속 전입을 교섭 중에 있습니다.

문1. 군경추력 영업행위 단속 여하?

답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계는 사변으로 인하여 막심한 피해를 입은 위에 군경추력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위축 일로를 걷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부로서는 화물자동차업계의 육성을 위하여 대화주인 외자청, 금련, 전매청, 석탄공사 등은 물론 관계 각 부처에도 화물자

동차운송사업 면허업자에 한하여 수송계약을 체결하도록 추진 노력하는 일방 군경추력 영업행위 단속에 관하여는 그간 예의 관계 부처와 협의 노력하여 왔던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지난 6월 17일에 국방, 내무, 교통 3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근절책을 논의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앞으로 구체적인 영업행위 사실이 있으면 이를 적발하여 엄중 처벌할 방침을 결정하고 각 지방장관에게도 구체적인 사실이 있으면 보고토록 시달한 바 있으므로 앞으로는 군경추력 영업행위는 이러한 강력한 시책으로서 점차 시정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문1. 조운 불하에 대하여

답 조운은 법인귀속기업체이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제1항4호 규정에 의하여 주식 불하를 하여야 할 것인바 해사의 귀속주식 수는 총 주식 수 77만 주 중 502,237주(65퍼센트)에 달하고 있으므로 종래 방식에 의하여 이를 일괄 불하하려면 현하 우리나라 민간자본의 빈약성에 비추어 성과를 기대기 곤란한 바 있고 분산매각 역시 재산재평가법의 공포 실시와 주식시장의 발족이 없는 한 실현이 곤란한 형편에 있습니다. 기타 점소단위로 재산 분할매각의 방법도 있겠으나 해 방법은 법인 청산 사무를 수반케 되는바 현재 청산실시 중인 동액의 회사의 실례를 보건데 수 개년의 시일과 막대한 비용을 소요케 되어 불하의 첩경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운의 불하 실시에 있어서는 이상과 같은 제반 애로가 개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타개코저 관계처와 긴밀한 연락하에 제반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바 관재청에서는 방금 조운과 같은 대기업체 불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불하대금 납부 규정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불원 실시될 일반은행 귀속주식 불하의 방안 등을 참작하여 해사 불하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체신부 소관

1. 유엔군 전신전화 사용료 징수 대책에 관하여

당부 소관 전화회선 40여 회선을 유엔군에서 사용하게 된 연유는 6·25 동란 직후 국

련군의 작전상 필요에서 발단한 것인바 당시 극도의 혼란 가운데 위기에 직면한 사태 하 자유진영의 공동운명을 도한 결전수행에 있어서 아국 정부로서는 국련군의 전쟁수행을 유리하게 하는 최선의 협조와 모든 기여를 다 하여야 할 당연한 의무를 지고 있었던 입장에 처하여 상기 회선은 계속 유엔군의 사용하는 바 되었으며 이 회선의 대부분이 각 주요 간선으로서 당 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 외라 시설 운영에서 소득되는 세입의 감소로 말미암아 이로 인하여 특별회계법에 의한 독립채산 원칙을 이행하여야 할 통신사업 운영상 결함이 생하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결론되어 당시 유엔군 측에서 군용 수송에 대한 운수요금과 전기, 수도료 등을 지불하고 방침이라 하므로 이 시기를 포착하여

1. 단기 4284년 5월 22일 미 제8군사령관 밴 프리트 장군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회선 사용료의 지불을 요청하였던바 동년 6월 6일자 미 제8군부사령 콜터 장군으로부터 미군은 한국에 있어서의 전쟁수행상 필요한 통신시설의 제공을 한국 정부에 의뢰하고 있음이 자국 정부의 정책인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후일 양국 정부 상호간에 토의될 것이라는 회한에 접하였으며
2. 단기 4285년 4월 21일 재무장관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당시 내한 중이던 미 대통령 특파 경제사절단과의 회담 시 교섭 절충하도록 의뢰하는 동시에 미 제8군에 대하여서도 조속 채무이행토록 촉구하였으며
3. 단기 4285년 11월 22일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 실정을 설파하고 특별 조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4. 단기 4286년 2월 7일 한국지역통신사령부 책임관에게 서면으로 8군 측 관계처와 누차 절충하였으나 성과를 얻지 못하였던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급속 주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동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신회계년도 이후의 사용에 대하여는 쌍방 간에 정식 협정을 체결하여 여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군 측 고위층과 상의하여 결과 회보하도록 의뢰하였던바 동년 3월 21일 동 사령부 함부렌 준장으로부터 관계 상부에 제시되었으니 잠시 유예를 바

란다는 회한이 있었으며

5. 단기 4286년 4월 18일 한국지역통신사령부 함부렌 준장에게 재차 독촉하였던바 동년 5월 1일자 동 준장으로부터 고위사령부와 협의한 후 전말을 회답하겠다는 회한을 받았으며
  6. 단기 4286년 6월 18일자 한국지역통신사령부 함부렌 준장에게 중간 독촉과 동시에 본 회선 사용에 부수되는 제반조건을 명시한 협정서 초안을 송부하고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7. 단기 4286년 9월 7일 미해결 중에 있는 실정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였고 국무총리는 동년 9월 14일자로 국련군 총사령관 마크 크라크 장군에게 서한을 보내어 본 문제 해결의 긴급성을 지적하고 이 중대안건의 진전에 관하여 각별한 관심과 조처를 촉구한바 있었으며
  8. 단기 4286년 9월 22일자 미 제8군사령부 통신감 트루 대령으로부터 미8군은 협정을 체결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항을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연락하여 왔으므로 동년 10월 1일자 한미합동경제위원회 한국 측 대표인 기획처장에게 합위에 부의하여 조속히 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9. 단기 4286년 10월 27일 한국지역통신사령부 로튼 소장으로부터 본건은 계속하여 예의 검토 중이며 연구가 끝나는 즉시 만족할만한 내용을 통고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한이 있었으며
  10. 단기 4286년 11월 2일자 국무총리 및 기획처장에게 전기 로튼 소장의 내보를 연락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음.
- 당 체신부 재정상 가장 중대한 관계가 있는 제기 회선의 대여 경위와 그 사용료를 징수코저 노력 추진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기술하면 전기와 여한바 이는 한국이 금차 사변에 있어서 전장을 제공하고 국련군에 대한 범유 시설의 대여를 불가피하게 된 전쟁 성격의 특수성과 현지 내주군의 권한제약 내지 미국 정부의 전비보상 방침의 미확정 등 저간에 개재되는 허다한 난관으로 인유하여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것인바 미군 당국에서도 당부의 실

정과 고층을 충분 양찰하고 본국 정부와 예의 절충 중에 있으므로 미납 사용료는 불원 완전 징수케 될 것이며 현재 요 징수액 여좌함.

단기 4283년도 분	14,080,640환
단기 4284년도 분	28,907,480환
단기 4285년도 분	285,352,400환
단기 4286년도 분	1,021,929,880환
계	1,540,270,400환

## 2. 전신전화 소통책 특히 서울시 전화 소통상의 대책에 관하여

타스카 사절단과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하기로 된 체신시설복구 3개년 계획에 의한 제1차년도인 작년도에 512만 불을 배정받아 그 자재가 연내에 도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서울시내 자동전화 복구 및 신설 도합 2만 대(사변 전 1만 4000대)를 위시하여 대전시에 전화 300대, 마산시에 전화 1000대, 기타 국내 무선시설 복구 등이 추진될 예정이며 제2차년도인 현 연도에도 최소한도 500만 불 이상의 배정을 받아 소기의 복구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며 국내 전신시설의 확장 개량책으로 서울 부산 간을 위시하여 국내 주요도시 간의 전신시설은 대부분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시설은 구식인 수동식임에 감하여 금후로는 조속히 최신식 테라타이프(자동통신)장치로 개량 시설코져 하며 국제전기통신업무가 시설부족으로 인하여 중요 수요에 원활히 수용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서울을 기점으로 하는 상항, 대북, 마니라, 동경 간의 전신전화 회선의 증설과 업무 확장을 급속 추진코져 하며 서울 시내 중요기관 가입전화의 소통에 만전을 기하는 방책으로 수용기계 대의 특수 분리장치 공사 증인바 금월 내로 완성될 것임.

## 3. 전채 우체국의 복구대책에 관하여

6·25 사변 전 남한 전역의 우체국 수 627개소 중 동란으로 인하여 그 63퍼센트에 달하는 393개소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나 그 후 이를 점차 복구하여 청사와 치안 상태 및 통신량의 과소 등 특수사정이 있는 27개소와 미수복지역의 17개소를 제외한 599개소의 우체국이 사변 전과 다름없이 전반 사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변 중

에 파괴된 청사와 손실된 시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 복구하여 체신사업의 운영을 본 궤도에 오르도록 적극 노력 중에 있는바 특히 중요한 우체국 중 서울중앙우체국은 정부 고층건물 수축 계획에 있어 제1차적으로 재건 복구키로 되었으며 그 외 대전, 김천 등 가청사에서 유지하고 있는 주요 도시의 우체국과 작년 부산지방 대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부산우체국 등은 원조자금으로서 불원 착공할 것임.

그 외 각 도시와 지방의 피해 입은 우체국은 국가재정이 허하는 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조속 정비토록 하여 통신 본래 사명 수행의 만전을 기하고저 함.

전차 회의에서 결의로 한 유엔군 일부 철수에 대한 반대결의문을 유엔군과 미국 정부에 각각 작 19일자로 발송했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방금 보고한 가운데 교통체신위원장 남송학 의원이 나와서 대한해운공사, 대한조선공사, 조선운수주식회사에 대한 국정감사의 실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1. 대한해운공사, 대한조선공사 및 조선운수주식회사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건

○**교통체신위원장 남송학** 교통체신위원회가 수삼일 전부터 우리 분과위원회를 한 도중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정부가 보증용자를 하는 우리 교통부의 산하 단체인 대한해운공사, 대한조선공사, 운수주식회사의 3단체에 대한 정부가 보증용자한 그것이 항간에서 다소의 여론도 있고 또는 우리 의원 가운데에서 거기에 대한 진술사항을 서로 묻기로 한 결의가 된 후에 거기에 진일보해서 국정감사를 하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결정한 사실에 있어서 국회법 제3조에 있어서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해야 될 것이 이제 우리 위원회로서 본회의에 대해서 이 국정감사 하자는 것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니 이 승인을 여기에 제안한 것이올시다.

그 일자리는 이달 22일부터 9월 4일까지로 우리 의원은 김재곤 의원 이하 8명으로 구성해서 이달 22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일간을 한해서 이 3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자고 하는 승인을 해 주

십소사 하는 요청이니 여러 의원께서는 이 요청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순주** 지금은 정전으로 해서 잠깐 동안 휴게하겠습니다.

(상오 10시20분 회의중지)

(상오 10시24분 계속개의)

지금은 교통체신위원장으로부터 제출한 대한해운공사, 대한조선공사, 조선운수주식회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 승인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의장!」 하고 언권 청하는 이 있음)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곽의영 의원** 지금 교통체신위원장으로부터 해운공사 기타 세 단체에 대해서 국정감사 제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오늘 금융계 부정사건, 농림부 의욕사건에 대해서 정부에 질문하자는 것이 때마침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질문하는 처지는 행정부에 감찰심계원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느냐 결국 이러한 취지하에서 행정부에 책임을 추궁하고 과거 행정부의 책임을 갖다가 시정시키기 위해서 오늘 질문 안건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우리 국회 자체는 무슨 결의를 하든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스스로가 국정감사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행정부에 과오를 빚어낸 것과 비등한 과오를 우리가 초래하면서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교통체신위원장께서 제안했다고 할 것 같으면 교통체신위원 자체가 교통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든지 또는 3개 단체의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든지 얼마든지 그 내용을 조사해서 이미 자기가 그러한 의욕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까지 능히 해결할 시간과 기회가 있고 또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사람은 현재 우리 국회에서 제2대 국회 때 산업은행 대출 관계를 갖다가 국정감사를 해서 세상의 물의를 시정하자는 것을 우리는 결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그 중간보고 하나 하지 않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를 할 때에는 책임을 저야 할 것이요.

그러한 의미하에서 만일 교통부 관계에 있어서 국정감사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교통체신위원회 자체는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이것을 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 자체가 더 좀 강력하게 실질적으로다가 시비비를 규명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도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마당에서 만일 그렇다고 하면 교통체신위원회 자체가 할 수 있는 안건을 갖다가 본회의에 내놓은 만큼 본회의에서 교통체신위원장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전문적인 재정분과, 예산분과 이런 등등을 여기에 추가하되 재정이나 예산분과에 있어서 국정감사에 참가하는 사람은 각 과 비율에 의해서 각과에서 균율적으로 대표가 나와서…… 교통체신위원회만을 교통체신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좋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재정 이러한 기술적인 분야에서 이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회 전체가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책임을 저야 하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해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교통체신위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재정이든지 예산분과에 추가를 하되 각과 비율로다가 선출을 해서 형성을 해서 3분과에서 책임을 지고 이것을 국정감사를 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을 교통체신위원장이 받아 주신다면 개의를 안 하겠습니까마는 만일 이것을 받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국정감사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좀 잘 해야 되겠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교통체신위원장 어떻습니까?

○**교통체신위원장 남송학** (의석에서) 안 받습니다.

○**곽의영 의원**(계속) 그러면 저는 이 국정감사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최순주** 남송학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교통체신위원장 남송학** 시방 곽의영 의원의 말씀은 국정감사를 하려려는 교통체신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또는 의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교통부장관을 불른다든지 소속 단체를 불려서 문의하는 것이 좋지 왜 본회의에 내놓느냐 또는 본회의에 내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분과라든지 또는 재정경제라든지 또는 거기에 소속 각 분과위원을 뽑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

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로서 생각할 때에 결정을 할 적에 우리도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초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재정경제위원회에 위탁을 할 것이고 또는 예산분과가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분과를 우리가 초청할 수 있을 것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할 때에 거기까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따라서 각 파라는 것은 우리 소속단체에 있어서는 우리 분과에 다 각기 소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뽑을 때에는 우리 교통체신위원회의 각 분과 또는 소속단체에 대한 비율로서 다 뽑았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무소속에도 계시고 또는 무소속구락부에도 계시고 우리 자유당에서는 우리 분과에서도 다 각각 비율로서 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 파에 대한 또는 소속단체에 대한 비율도 완전히 거기에다 생각하고서 모든 일을 했으며 예산결산위원회에 있는 백남식 의원도 거기에 대한 한 일원으로서 참석하시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된 분도 계시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소속된 분도 계시고 또는 소속단체에 관련된 분도 계신 까닭에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참작을 해 가지고 여기에 인원을 구성하고 모든 소속에 대한 균형이라든지 비율을 맞추어서 여덟 분을 다 뽑은 까닭에 거기에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일이 유효적으로 종적으로 횡적으로 다 완전히 되었다고 생각해서 광의영 의원의 발언에 대한 것을 반대하면서 여기에 제출하신 이 여덟 의원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끄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최순주** 이충환 의원의 먼저 발언통지가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 이충환** 지금 광의영 의원께서 산업은행 국정감사 중간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책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안 할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50억 부흥국채 발행에 수반되는 국정감사 실시에 있어서는 광의영 의원도 그 반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탄 사람을 대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부흥국채 발행에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체라는 것은 38

이남 각 지역에 이것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지구, 대전지구, 부산지구 이 3반으로 나누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로소 지난 일요일 겨우 끝났어요. 그래서 어제 제1차 회합을 열어 가지고 우리는 오는 23일 본회의에 반드시 이것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결의를 해서 23일까지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지금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왜 중간보고를 하지 않느냐? 중간보고에 있어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빠진 맥주 격의 보고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완성된 것을 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비관을 받고 또 국회가 이 국정감사 보고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순서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의들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중간보고를 하지 않고 직접 국회 본회의에 최종적인 보고를 하도록 저의들은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행 국정감사에 따라서 중간보고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께서는 많이 책망 마려 주시고 지금 교통체신위원장 남송학 의원께서 보고하신 데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해운공사를 비롯한 산하단체의 국정감사도 매년 우리가 정기국회가 소집이 되어서 총예산을 심의할 적에는 이 예산심의에 선행이 되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상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국정감사 실시의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용인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그때에 국정감사를 실시해도 무방합니다마는 이러한 해운공사를 비롯한 교통부 산하단체의 국정감사는 일반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예산결산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를 넣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해운공사 예산에 있어서는 4286년도의 예산에 있어서도 해운공사에 대한 보조금은 전액이 삭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 해운공사의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그다지 이 참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저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이 국정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있

어서는 이 금후에 오는 일반 종합적인 국정감사와의 관계성 문제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해 주실 문제의 성질의 것이지만 우리는 되도록이면 종합적인 국정감사에 전체를 미루기로 하고 그때그때의 특수한 이 국정감사 실시는 특수한 사건에 국한해서 특수한 사건이 생겨서 국정감사를 할 필요를 느낄 때에 국정감사권을 발동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 의견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올시다.

(「의장!」 하는 이 있음)

○권중돈 의원 본 국정감사를 제안한 남송학 의원한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남송학 의원은 현재 교통체신위원장이십니다. 위원장의 지위에 있는 분이 갑자기 나와서 교통부 산하단체에 국정감사를 할 필요를 느낀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근거를 여기에 제시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교통부 산하단체만 급히 국정감사를 할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 국정감사는 우리 국회의 보도입니다. 보배 칼이란 말이에요. 국정감사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감사를 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권위가 서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있고 권위가 서려면 방식에 있어서 명확해야 됩니다. 왜 국정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국정감사를 할려면 교통부 산하단체뿐만 아니라 상공부라든지 각 분과위원회에서 감사를 할려면 감사할 대상이 많습니다. 할려면 종합적으로 총출동해서 1개월이면 1개월 혹은 20일이면 20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갑자기 나와서 별 근거도 없는 그러한 국정감사를 하자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최순주 백남식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백남식 의원 이 안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까 광의영 의원 발언요지에 대해서 나는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광의영 의원은 평소 대단히 명랑한 분인데 오늘은 특히 명랑치 않게 보입니다.

(소성)

왜 그러나 하면 자기의 분과를 참가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는 취할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놓았느냐 교통체신위원장이 제안할 때에 이 국회의사당 내에서 아직 발표하지 못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사전에 이 문제를 갖다가 논의한다든지 혹은 명백히 밝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중돈 의원의 요구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무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못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재정을 감시하고 또한 교통체신위원회라든지 또 각 소속분과에서 예산 면에 있어서 만일 타당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우리가 가질 때에는 특별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우리의 보도를 한 번 이상 빠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국회로서 또 분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항시 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지금 위원장에게 물어보았자 언급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재차 대변하는 것보다도 이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부의장 최순주 좋으면 승인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승인 안 할 것이니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교통체신위원회 제출의 대한해운공사, 대한조선공사, 조선운수주식회사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 승인에 관한 건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거수 표결)

제석원 수 156인, 가에 54표, 부에 4표로 미결입니다.

남송학 의원 말씀하세요.

○교통체신위원장 남송학 이 승인 요청에 대해서 미결된 까닭에 제가 명백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서 여러 의원의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곽이라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의 의심을 풀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 국정감사를 할려고 결정할 시기에 있어 상당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국정감사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국회의 권위도 세우고 또한 국정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권위 있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완전치 못하여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격으로 해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국회의 위신에도 관계되는 까닭에 이에 신중한 토의와 검토를 했

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결할 때에는 이충환 의원이 말씀하신 해운공사에 대한 보증용자는 4286년도 예산안에서 비토를 하고 주지 않았는데 무슨 까닭에 해운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느냐 그와 같은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4286년도 예산안에 해운공사에 대한 보증용자가 비토될 때에 실질적으로 해운공사가 정부가 맡긴 사명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한 점도 있고 또한 해운공사가 운임을 딸라로 받아 가지고 그 딸라가 일본에 소비되고 직접 해운공사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또한 그 액수가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규명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가운데에는 해운에 대하여 지식이 풍부한 분이 제3대 민의원 교통체신위원회에 들어오셔서 해운공사에 대한 이면을 확실히 알고 이제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국가재정에 큰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실한 자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단안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 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비에 대한 문제, 지나친 경비를 지출해서 해운공사 발족 이해 오늘날까지 적자를 내고 있으면서 앞으로 천리호라든지 남해로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가 그대로 대여하고 있어서 모든 일을 해 가라, 그래서 오늘날까지 막대한 국가자원을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해운공사는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이것은 점점 더 심해 갈 것이며 국가의 막대한 자원이 소비되는 여러 가지 사실이 내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 동지가 잘 알고 있음으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를 해서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단안을 내렸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공사에 있어서는 조선공사에 정부가 용자한 액이 있고 거기에 대한 용자에 대한 모든 태도가 정상적으로 움직여 가지 않는다고 하는 소문도 들리며 따라서 조선공사가 앞으로의 발전을 어떠한 방향으로 진출되어 간다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의심 안 할 수 없는 부면이 있고 정부보증 용자에 대한 것도 모두 참고로 들고 모든 은행에 있어서도 변상한다고 하고 갚는다고 하는 데 있어서 갚을 길이 없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에 봉착되어 있던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보증용자 할 때에는 그냥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한을 정해 가지고 다시 반환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우리가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로서도 더욱이 이와 같은 것을 계속한다면 한국의 재원에 대한 부족을 갖다가 충당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며 더욱더욱 앞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정부가 또다시 용자를 해 주지 않으면 그 회사를 지탱할 수 없는 이러한 사태에 봉착하고 있으니 우리 한국의 재정상태가 이와 같이 고갈상태에 있는데 어떠한 회사에게는 무제한하고서 정부가 보증용자를 해 주고 정부가 쓰지 않으면 안 될 때에 쓰지 못하는 이와 같은 어려운 사태에 있으니 이와 같은 사태를 검토할 때에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 앞으로 어려운 재정 면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국정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회사의 발전과 앞으로 국가재원에 대한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윤택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결국 단안을 내렸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의원 동지께서 여기에 대해서 미리 이것을 갖다가 말씀드리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이런 것을 이 의사당에서 말씀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방어책을 그 회사가 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정감사의 내막에 대한 것을 이 의사당에서 누누히 설명을 하고 나중에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방어책을 강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에 제가 여러분 앞에 승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의혹이 풀리지 않으므로 해서 거수를 안 해 주시니 이제 불가부득이 내포된 사정을 여러분 앞에 말씀하면서 동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니 교통체신위원회가 여기에 감정이 라든지 돌발적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까닭으로 이 근거를 미연에 방지하며 이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결의를 할려고 하는 진정한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려서 이 승인에 대한 것을 빨리 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의사의 일단을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최순주 박영종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었습니다.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박영종 의원 저는 되도록이면 광의영 의원과 권중돈 의원이 말씀하신 국정감사를 보류하자는

데 동의를 할 용의를 가졌읍니다만 거기서 알려 주신 몇 가지의 이유를 충분히 수궁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남송학 의원이 제 의한 어떠한 내면적 무슨 의도나 동기나 이런 것은 따질 필요도 없고 또 그분이 길게 말씀을 하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서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약간의 이유를 가지고 이 국정감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조선공사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2대 국회 때에 여기에 100억인가 얼마의 돈과 수만 딸라의 돈을 정부에서 용자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공사는 조선을 하기커녕 거기서는 간단한 함마 소리조차 나오지 않고 낭비와 좋지 못한 풍문이 들립니다.

아까 남송학 의원이 국회 권위상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어떠한 결실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정감사권이 있는 이상 구체적인 기술의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의 죄악이 폭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위신을 손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선공사의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능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부의 기대와 국민의 기대에 배임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운공사는 여러분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밀수행위에 있어서 적발되는 선박의 소속을 보면 해운공사가 가장 그 수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 이상의 그 무었을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 38선이 가로막혀서 우리의 영토가 절반밖에 되어 있지 못한데 우리가 해운발전을 해야 할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조선공사와 해운공사가 이러한 배임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지금 국정감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고 이 국정감사를 시행한 뒤에 있어서 이 동의를 대단히 잘 된 동의라고 여러분이 후일에 칭찬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찬성하자는 것을 동의합니다.

○부의장 최순주 지금은 박재홍 의원 발언하시겠습니다.

○박재홍 의원 개원 이후 오늘까지 89일 동안 저 뒷구석에 앉아서 한 마디도 발언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배, 후배 또는 자유당, 야당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단상, 단하에서 많이 발언하시는 것과 정치적으로 여러분이 투쟁하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저도 그동안 배운 점도 많이 있고 또 더 좀 침묵을 지켜 가며 말씀하지 않고 많이 제가 여기서 검토도 해 보았읍니다만 단지이 문제에 한해서는 말씀 안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말씀하고 지금 문제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한다면 교통체신 분과위원의 한 사람으로 있는 저로서 아마 의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분이 자유당의 한 사람인 만큼 또 구체적인 내막이 없으니까 여기에 무엇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의미로서 아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저는 무소속동지회도 아니고 순무소속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자면 무두일미(無頭一尾) 격입니다. 아무 것도 없이 의회가 헤어지면 제 마음대로 가 버리고 이와 같은 자리에 앉은 저로서는 또한 제가 부산에 있는 만큼 현재 해운공사라는 것은 더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적어도 정부로부터 10억 이상의 용자를 받아 가지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가를 위하여 요만큼 한 일도 한 일이 없고 이것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현재 정부 보유불과 같이 여기에 달려 붙어서 덮치고 자빠지고 이리 물고 저리 물고 이와 같은 문제가 뭉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당에 있는 저로서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제가 여기에 와서 경험하는 한 가지의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들은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부거나 박재홍 일개인이거나…… 적어도 박재홍을 준법인의 한 사람이고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기관에 있고 우리가 직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로 말미암아서 100번 법을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정부에 넘겨 보내야 정부의 집행하는 관리가 말하자면 사람이 이것을 집행하는 데 집행을 잘 하고 못 하는 여기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며 또 국민이 잘 살고 못 산다는 것은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웁소!」 하는 이 있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점을 국회에서 우리가 한 방울의 피까지도 우리 국민을 위하여 우리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행정부에 가서 집행하는 기관인 행정부에서 옳은 감독이 되지 못하고 여기에 묻고 저기에 묻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다른 말하기가 싫습니다.

금반 우리 해운공사, 운수회사, 조선공사 이 세 곳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시켜 보십시오. 잘 하는가 못 하는가, 과거에 우리가 야에 있을 때에는 국정감사라는 것이 국민이 더 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산이 명동해 가지고 쥐 한 마리도 나오지 않는 이러한 점을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명색이 교통체신분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있는 저로서는 강력히 주장하고 저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몇 마디 드리는 것이며 다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한해서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동정이 있기를 바라고 내려가겠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이로서 토론은 종결하고 제2차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의장!」 하는 이 있음)

김상돈 의원 말씀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 속담에 꼬리가 길면 밟힐 날이 있고 그물코가 삼천이면 걸리는 날이 있드라고 대한민국에 죄를 짓드라도 백두산같이 지은 높은 미끄러지 빠져 나가듯이 빠져 나가고 송사리처럼 높은 높은 모두 서대문 공덕형무소에 걸려든다는데 해운공사는 중석불 사건의 중심인물 70억, 80억을 해 먹고 우리의 수십 만 방위군을 개죽음시킨 문제의 인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초대 국회 때에 국가민족을 망치는 합법적인 백주백색 테로를 감행하던 사람 그 기관의 장본인이 거기에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초대 국회 때에 그 무용한 정치공작대를 백해무익한 이것을 해체해야 한다는 발언하여 결정을 짓고 그날 집에 돌아왔습니다 했더니 청년 4, 5명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테로가 왔는가…… 당면해 놓니 도리가 없고 당하였는데 의외에도 무릎을 꿇어서 경건히 인사를 하고 드릴 말씀 있소 저희는 만주에서 생사를 같이 하여 벌어들인 사람인데 여기에서 그런 방면으로 구직을 하든 차인데 마침 누가 영등포 조피공장을 얻어줄 테니 약 300만 원 운동비를 조달하면 해겠다고 해서 300만 원 돈을 조달하는 중에 옷

지 못할 사실은 누구를 주기 위해서라고 하고 금팔찌를 순금으로 몇 돈 중 몇 치수를 해 오라 하였다, 그래서 어쩔 도리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는 격으로 금팔찌를 몇 돈 중 몇 피수로 해 오래는 대로 거기에 맞도록 해 갔는데 사흘 만에 그것이 크니까 다른 것으로 바꾸어 오라고 안 하고 찢라서 주려오라고 하는 까닭에 이상하다 돈 수와 치수를 말 그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 크니 찢어서 주려 오라고 하는 소리가 무엇인가, 그러나 거기에 무릎을 꿇을 도리밖에 없었다 그래서 은방에 가서 그것을 잘랐더니 순금으로 해 갔던 것이 그동안에 납에 도금을 한 것으로 변했다 말이에요.

한 번 먹은 것이 부족하니까 재탕을 해서 먹려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소성)

그래서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구수회의를 한 결과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 부인의 무엇 묻은 속옷까지라도 팔아서 이것을 해다 주지 않으면 이때까지 일이 공사가 될 터이니 도금 납금팔찌를 내버리고 순금 팔지를 또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나 소식이 있을까 오늘이나 소식이 있을까 하고 학수고대를 하였드라니 우리를 사기해 먹은 장본인 녀석이 여기에 큰 주인공임을 알 때에 놀래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점이 무엇이나 하면 그대들은 관리인이라면 적당한 월급에 남음이 있다면 국고 세입을 할 것인데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해서 300만 원을 그러면 손자, 증손, 고손리까지 빼먹을 그놈보다 더 나쁜 도둑놈인데 할 소리가 무엇이나 했더니 저희들은 불행히도 그렇게 되었거니와 어린 인물이 대한민국에 다시 등용될 때에는 살 수 없으니까 이런 인물이 다시 등장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그것을 호소하러 왔소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에 김준연 의원이 까딱하면 백색테로에 공산당으로 몰려 사형을 당할 번 했던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그러한 장본인이 나중에 어디로 가 있느냐 했더니 지금 문제의 주인공에 취직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모를지언정 금팔지를 두 번씩 해 먹은 사람이 이런 기관에 또 등용되었고 또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부산세관장이 있는가 하면 관인을 50개, 70개 만들어 가지고 밤 세관장 노릇을 하고 주일대사관 일등서기관으로 가서 아마는 공산당과 연락

을 하고 일맥상통한 듯 홍콩으로 몇 만 딸라가 왔을 때 경시청에서 체포장을 받은 자가 훌쩍 날러 버리고 필시는 이 사람이 내일이나 모레는 고관대작으로 또 나올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인물들이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앉아 좌지우지하는 까닭에 정부가 보증한 대부의 8할이 안 들어 오고 죽은 소고기 노나 먹듯이 다 노나 먹는 까닭에 자금은 고갈되고 매사는 허사가 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 아니 할 도리가 없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러므로서 특히 해운공사에 이런 인물이 역대적으로 있어서 등용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진대는…… 들쭉에 있어서 지금 그 숫자는 분명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지난번 대정부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원고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말었습니다.

1년에 비용까지 곱해서 37만 딸라를 주고서 사오는 배가 오는 도중에 3, 4차례를 수선을 하고 지금도 좋지 못해서 일본의 어느 항만에 들러서 수선을 해 오는 도중인데 그것이 온다고 하는 것이 1년 이상을 걸려 간신히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남의 나라에서 쓰지 못해서 내버리는 배 잘 처야 4노트밖에 안 나가는 이런 배를 30여 만 딸라를 주어 가지고 1년을 걸려 4, 5차례를 수리를 한다고 하고도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일본 어지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 것도 어디 소속인지 모르지만 교통부나 해운공사 같은 데가 관련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또 한 가지 아까 어떤 의원의 말씀과 같이 오히려 국정감사가 국회 개원 이후에 곧 해야 될 터인데 몇 달이 지나도록 이때까지 안 했다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으려니와 현명한 남송학 위원장으로부터 이러한 발의가 있어서 이것을 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손이 모자라면 발까지 전부 들어서 가결할 지언정 무엇이라고 반대할 것이 있습니까?

(소성)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등장하는 인물의 격으로 본다고 하든지 여러 가지 사사건건으로 보아서 국정감사를 우리 국회로서 단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찬성을 표하면서 잠깐 참고의 말씀을 여쭙니다.

○**김재곤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저는 교통체신 분과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발의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역시 외부에 해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내막에 대해서 언급을 피하려고 생각했드렸습니다.

그러나 권 의원께서나 박 의원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미미한 내용인 것 같으면 특별히 개회 중에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김상돈 의원이나 제가 지금 새삼스러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한 말 드릴려고 하는 것은 제 과거의 경력이 선원이올시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그 수가 가장 극소한 갑종 선장의 면허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운계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이 큰 사람의 하나입니다. 제가 해상생활을 하고 또 거기에…… 교통부에 들어가 가지고 교통행정, 다시 말하자면 해사 행정에 타치하고 있을 때 1대 국회의원들, 2대 국회의원들께서 국정감사를 많이 오셨드렸습니다. 그 당시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느낀 바는 요정도의 국정감사일 것 같으면 하등에 관공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다행으로 203명 가운데에서 배를 잘 알고 바다를 잘 알고 해운회사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다소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문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것이 국가백년대계를 세우는 데 조금이라도 이바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의 모든 신념과 전력을 해운발전에 기우리고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신조올시다. 특히 방청객이 많이 계시고 여기에 외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특수한 부문은 빼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 만일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겠습니다.

(「고만 두어요」 하는 이 있음)

여러분들이 고만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는 의향이 많이 계신 까닭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부패의 일로를 걷고 있는 해운정책에 조금이라도 한 시라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오히려 해운정책에 대한 국정감사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어떤 의원 말씀과 같이 교통부나 또 그 산하단체의 장부를 가지고 와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도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과 여기에 모이신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절대다수의 찬성을 해 주셔서 국회의 위신으로서 국정감사에 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문의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잘 아는 이 부문이 썩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 분과위원회에서 발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전의 대정부질의전에 있어서 그러한 질의전을 하지 않았느냐? 만약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제가 모르고 있는 사실과 관련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조사를 해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국정감사를 다소 늦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은폐하지 못할 만한 증거를 잡고 난 뒤에 하기 위하여 사실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로서 그 당시에 대정부질의전에 한 마디도 질의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 참작해서 김재곤 의원의 동의에 많은 찬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이제는 충분히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2차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거수 표결)

재석원 수 156인, 가에 145표, 부에 무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국정감사는 실시하기로 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 박영출 의원의 보고가 있겠다고 합니다.

○운영위원장 박영출 미국대사관에서 금번 도미 여행하신 이 대통령의 여행 중 찍은 사진 뉴스가 거리에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 의원들에게 보여 주겠다는 것과 겸해서 최근 미국에서 된 음악사진하고 대단히 훌륭한 사진이 와서 이 역시 서중에 수고하는 의원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의사를 전하여 왔기 때문에 본 운영위원회로서는 이 호의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해서 오늘 산회 직후에 이 활동사진을 여기서 보도록 했습니다. 방청석도 원하면 이 사진을 함께 보는 것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실 줄 압니다.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금융계 부정사건 및 농림부 의욕사건에 대한 질문」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불행히도 오늘 아침에 특별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와서 답변을 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 다음 회

의에 참석하겠다는 그런 통지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다음 순서로 민사소송비용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심사보고를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의원이 나와서 하겠습니다.

(참조 1)

#### 민사소송비용법안

제1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조 민사소송인지법에 의하여 첩부한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제3조 소송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4조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일당은 1일 100환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 없는 육로에는 1리에 10환 이내, 숙박료는 1박에 300환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5조 법관 및 법원 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 여비, 숙박료는 공무원규정에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6조 감정, 통역, 번역 및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은 법원에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7조 통신 및 운반에 요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

제8조 관보, 공보 및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은 그 정액에 의한다.

제9조 본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

제10조 강제집행 및 신청사건에 관한 비용은 이상 수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강제집행 또는 신청사건에 관하여 보관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비용은 법원의 정한 바에 의한다.

제11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기타 필요한 비용은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지급한다.

제12조 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집행력 있는 채무, 명 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21조, 제123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3조 집달리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제14조 본 법은 단기 428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본 법 시행 전의 소송절차에 요한 비용은 구법에 의한다.

제16조 본 법 시행 전까지 시행된 민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은 폐지한다.

제17조 본 법에 규정한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일당, 기차 없는 육로 여비, 숙박료의 최고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

(참조 2)

민사소송비용법수정안(법제사법위원회)

(1)제4조 중 「일당은 1일 100환」을 「일당은 1일 200환」으로 「리에 10환」을 「4킬로미터에 30환」으로 「1박에 300환」을 「1박에 500환」으로 각각 수정하고 「법원」 다음에 「또는 수탁판사」를 삽입한다.

(2)제5조 중 「공무원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수정한다.

(3)제8조 중 「공보」를 삭제한다.

(4)제12조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121조, 제123조」를 「민사소송법 제121조 내지 제123조」로 수정한다.

2. 민사소송비용법안 제1·2독회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민사소송비용법안이 법전편찬위원회의 안으로 국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요전에 잠깐 상정할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민사소송비용법안도 물가와 비용이라든지 현실에 맞지 않은 까닭으로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자는 것이 본 법안의 골자인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약간 수정한 개요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4조의 「당사자, 증인, 감정인, 번역인의 일당은 1일 100환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일당은 1일 200환」으로 「리에 10환」을 「4

킬로미터에 30환」으로 「1박에 300환」을 「1박에 500환」 이내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들어서 「법원」 다음에 「또는 수탁판사」를 삽입한다, 제5조 중 「공무원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수정한다, 제8조의 「공보」를 삭제했습니다.

제12조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121조, 제123조」를 「민사소송법 제121조 내지 제123조」로 이렇게 정리한 뒤에 부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민사소송비용법 초안은 현행법에 의해서 했고 다시 말하면 현행법을 기준해서 조문을 낸 것입니다.

○**부의장 최순주**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의도 없으면 토론 종결을 하겠는데 제2독회로 들어가는 데 대한 의사를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없으실 것 같으면 제2독회로 부의하자는 것에 대해서 가하다고 하시는 이는 거수해 주세요.

(거수 표결)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원 수 154인, 가에 91표, 부에 무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 3일 참을 필요가 없이 제2독회로 즉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원안을 읽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된 것을 읽겠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어떻게 할까요? 매 조마다 여러분이 가결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조로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가결을 할까요?

이의 없으시면 축조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1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수정안 없습니다.

「제2조 민사소송인지법에 의하여 첩부한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수정안 없습니다.

「제3조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에 의한다」

수정안 없습니다.

「제4조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일당은 1일 100환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 없는 육로에는 1리에 10환 이내 숙박료는 1박에 300환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서는 『「일당은 1일 100환」을 「일당은 1일 200환」으로 「1리에 10환」을 「4킬로미터에 30환」으로 「1박에 300환」을 「1박에 500환」으로 각각 수정하고 「법원」 다음에 「또는 수탁판사」를 삽입한다』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제5조 법관 및 법원 서기의 증거 조사에 요하는 일당, 여비, 숙박료는 공무원규정에 정한 금액에 의한다」 그렇게 원안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수정안은 「법관 및 법원 서기의 증거 조사에 요하는 일당, 여비,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정한 금액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6조 감정, 통역, 번역 및 측량에 관한 특별 요금은 법원에 정한 금액에 의한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정준 의원 (의석에서) 수정안과 원안을 물어가지고 결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부의장 최순주 제4조에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결을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4조의 수정안을 묻겠습니다.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조는 어떻습니까?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고 그러합니다. 그러면 통과되었습니다 제4, 5조를 가결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6조는 원안대로입니다. 수정안은 없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대로 가결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7조 통신 및 운반에 요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

이것도 수정안이 없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이의 없어요?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8조 관보, 공보 및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은 그 정액에 의한다」

수정안은 「공보」를 삭제하고 「관보 및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은 그 정액에 의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하였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9조 본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그 실비액에 의한다」

이것도 수정안이 없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10조 강제집행 및 신청사건에 관한 비용은 이상 수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강제집행 또한 신청사건에 관하여 보관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실용은 법원의 정한 바에 의한다」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최순주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11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기타 필요한 비용은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지급한다」

○부의장 최순주 이의 있습니까?

(「없어요」 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통과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12조 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집행력 있는 채무, 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23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121조, 제123조」 이것을 수정안에는 「민사소송법 제121조 내지 제123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이의 있으십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통과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13조 집달리 수수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바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부의장 최순주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음」 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통과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부칙」 「제14조 본법은 단기 428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몇 년 몇 월 몇 일이라고 날자를 명기하지 않은 이 법이 언제 통과될런지 모르기 때문인데 만약 통과해 주시면 행정부의 준비 관계도 있고 해서 9월 1일부터 시행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어떻습니까? 9월 1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음」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15조 본 법 시행전의 소송절차에 요한 비용은 구법에 의한다」

이것도 수정안이 없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음」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16조 본 법 시행전까지 시행된 민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은 폐지한다」

이것도 수정안이 없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17조 본 법에 규정된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일당, 기차 없는 육로 여비, 숙박료의 최고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하여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

○**부의장 최순주**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통과합니다.

지금은 제2독회를 끝마쳤습니다.

그러면 제3독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준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 의원** 이로써 2독회는 끝나고 3독회로 넘어가는데 3독회는 약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이요」 하는 이 있음)

○**부의장 최순주** 3청 있습니까?

(「3청이요」 하는 이 있음)

3청 있습니다. 그러면 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재석원 수 157인, 가에 86표, 부에 무표로써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민사소송인지법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를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의원 말씀하세요.

(참조 1)

민사소송인지법안

제1조 민사소송 서류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그 정본에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원 서기가 당사자의 구술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서에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제1심 소장에는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응하여 다음 구별로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환까지 20전
동	30환까지 30전
동	50환까지 50전
동	100환까지 1환
	100환을 초과한 1000환까지는 그 초과부분의 매 10환까지에 10전의 가산액
동	1000환을 초과한 1만 환까지는 그 초과부분의 매 10환까지에 8전의 가산액
동	1만 환을 초과한 부분은 그 초과부분 매 10환까지에 5전의 가산액

소송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함에는 민사소송법 제22조, 제23조에 의하여야 한다.

제3조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소송의 가액은 1000환으로 한다.

전항의 소송과 그 소송으로 인하여 생길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1개의 소송가액에 의하여 인지를 첨부한다.

제4조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소송물인 때에는 반소의 소장에 인지의 첨부를 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공소장에는 제2조의 규정액에 10분지 5를 가한 인지를 상고장에는 그 규정액에 배액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민사소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 제3조 및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반액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반액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의하여 소송으로 계속된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항의 첨부인지액을 합산한다.

제9조 재심의 소송에는 법원의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제5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다음 계기한 신청으로 소송물가액 또는 청구가액이 1000환 미만인 때는 1환의 인지를 1000환 이상인 때에는 2환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일지정의 신청
2. 소송절차 수계의 신청
3. 증거의 신청
4. 소송비용 확정신청의 신청
5. 가집행 선고의 신청

제11조 다음 계기한 신청으로 소송물가액 또는 청구가액이 1000환 미만인 때에는 2환의 인지를 1000환 이상인 때에는 4환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66조, 제77조의 참가신청
2. 제소 또는 기피의 신청
3. 항고
4. 집행력 있는 정본의 신청, 2통 이상의 신청에는 매 통에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강제집행의 정지, 속행 또는 집행처분 취소의 신청
6. 배당요구
7.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의 신청
8. 채권 또는 기타 재산권의 집유신청
9. 가집유 또는 가처분의 신청

제12조 답변서 기타 전 수조에 계기하지 아니한 신청에는 전 2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본 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자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자가 그 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인지를 첨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민사소송법 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송사건에는 본 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를, 신청사건에는 본 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를 준용한다.

#### 부 칙

제16조 본 법은 단기 42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본 법 시행 전까지 시행한 민사소송용인지에 관한 법령은 폐지한다.

제18조 본 법 제3조제1항의 소송가액 및 제10조, 제11조의 인지액은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

(참조 2)

#### 민사소송인지법수정안

(1)제2조제1항 단서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그 가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20만 환으로 간주한다」

(2)동조 동항 소송목적물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0환까지 20환
동	3000환까지 30환
동	5000환까지 50환
동	7000환까지 70환
동	1만 환까지 100환
	1만 환을 초과한 10
동	만 환까지는 그 초과
	부분의 매 1000환까
	지에 10환의 가산액
	10만 환을 초과한
동	100만 환까지는 그
	초과부분의 매1000
	환까지에 8환의 가
	산액
	100만 환을 초과한
동	부분은 그 초과부분
	매 1000환까지에 5
	환의 가산액

(3)제3조제1항 중 「1000환」을 「10만 환」으로 수정한다.

(4)동조 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22조」를 「민사소송법 제22조제1항」으로 수정한다.

(5)제3조제1항 중 「1000환」을 「10만 환으로 수정한다」

(6)제6조 중 「민사소송법 제73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또는 제75조」로 수정한다.

(7)제8조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444조」를 「민사소송법 제442조」로 수정한다.

(8)제10조 중 「1000환」을 「10만 환」으로 「1환」을 「100환」으로 「2환」을 200환」으로 수정한다.

(9)제11조 중 「1000환」을 「10만 환」으로 「2환」을 「200환」으로 「4환」을 「400환」으로 각각 수정한다.

(10)동조 제1호 중 「민사소송법 제66조, 제77조」를 「민사소송법 제64조, 제75조」로 수정한다.

(11)제12조 중 「전2조」를 「제10조」로 수정한다.

### 3. 민사소송인지법안 제1·2독회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민사소송인지법안도 역시 법전편찬위원회안으로서 나온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화폐가치의 변동에 따라서 소송서류에 첨부하는 인지액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민사소송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서

현행 민사소송법을 표준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수정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2조1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가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20만 환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합의부로 돌리자 그래서 이 2조의 1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항에 소송목적물의 가격을 전부 100배로 인상해서 원안에는 10원까지를 20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100환까지 20환, 3000환까지 30환, 5000환까지 50환 이렇게 각각 100배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2항 중에 민사소송법 제22조를 민사소송법 제22조제1항으로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제2조 조항에 「그 가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20만 환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21조를 제21조1항으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1항 중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소송의 가액은 원안에는 1000환으로 한 이것을 10만 환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민사소송에 이혼사건이라든가 친자확인사건이라든가 이러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6조에 들어가서 「민사소송법 7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 제3조 및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것을 역시 현행법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민사소송법 제73조」를 「제71조 또는 제75조」로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8조2항에 들어가서 「민사소송법 444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현행 민사소송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42조」로 수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들어가서 「소송물가액 또는 청구가액이 1000환 미만인 때에는」…… 이것을 「1000환」을 「10만 환」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1000환 미만인 때에는 1환의 인지를」…… 이것을 「100환」으로 고치고 고다음에 「2환」을 「200환」으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제11조에 들어가 가지고 역시 「1000환」을 「10만 환」, 「2환」을 「200환」, 「4환」을 「400환」으로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각각 100배 인상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조 1호 중에 역시 「민사소송법 66조, 77조」를 「민사소송법 64조, 제75

조」로 수정한 것 이것도 역시 현행 민사소송법을 기준으로 한 결과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제12조 중 「전2조」를 「제10조」로 수정했습니다.

이것이 대개 수정한 내용입니다.

○**부의장 최순주** 민사소송인지법안의 심사보고가 끝났고 이제는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도 없으면 제2독회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2독회에 들어가는 데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재석원 수 157인, 가에 50표, 부에 무표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재석원 수 157인, 가에 99표, 부에 무표로 가결했습니다.

제2독회에 들어가서 축조심의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그러면 원안을 읽고 또 수정안을 읽겠습니다.

「민사소송인지법」

「제1조 민사소송 서류에는 다음 규정에 의하여 그 정본에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원 서기가 당사자의 구술에 의하여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서에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수정안이 없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그러면 제1조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통과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2조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제1심 소장에는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응하여 다음 구별로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원안에는 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는 「단 그 가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20만 환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원안에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환까지 20전」, 「30환까지 30전」, 「50환까지

50전」, 「70환까지 70전」, 「100환까지 1환」, 「100환을 초과한 1000환까지는 그 초과부분의 매 10환까지에 10전의 가산액」, 「1000환을 초과한 1만 환까지는 그 초과한 부분의 매 10전까지에 8전의 가산액」, 「1만 환을 초과한 부분은 그 초과부분 매 10환까지에 5전의 가산액」 이렇게 한 것을 각각 100배를 올려서 수정안에는 「소송목적물의 가액금, 「1000환까지 20환」, 「3000환까지 30환」, 「5000환까지 50환」, 「7000환까지 70환」, 「1만 환까지 100환」, 「1만 환을 초과한 10만 환까지는 그 초과부분의 매 1000환까지에 10환의 가산액」, 「10만 환을 초과한 100만 환까지는 그 초과부분의 매 1000환까지에 8환의 가산액」, 「100만 환을 초과한 부분은 그 초과부분 매 1000환까지에 5환의 가산액」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박영출 의원 말씀해 주세요.

○**박영출 의원** 저는 이에 대해서 질의에 근사한 이의올시다라는 어떤 금액 인상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요금을 정한다 이러한 그 숫자에 있어서 비록 그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약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백보를 양보해서 그 금액이 극히 약소한 경우에 소액에 있어서는 불문에 부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상당한 고액에 이르는 다액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숫자를 어떠한 기초를 가지고 산출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표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즉 우리 사회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전례로 보아 가지고 일반 소송사건의 대다수의 허다한 수가 얼마만한 액수의 소송이 많이 있었던가에 대해서 우리의 일반적인 능력에 대해서 어떠한 판정을 가지고 가기에 대한 인지법에 허락하는 한에 있어서는 정당한 국고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 이하로 감액할 필요도 없겠고 적당한 액수를 요구할 것이올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나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촌의 어떤 무식한 노파가 있는데 그 사람은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아무도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의 남편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노파는 소송을 제기할 비용도 없었다 그 사람이 소송으로서 쟁취할 재산은 상당한 금액이 있지만 그 인지법에 규정된 납부할 비용이

상당한 고액인데 그 액수에 지장이 되어 가지고 그 노파는 소송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법률문제에 있어서 심히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할른지 몰라도 또 그 외에 한 가지 다른 예를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에 있어 가지고 관선변호인을 무료변호인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국가 당국에서 반드시 구제해 주어야 할 성질의 어떻게 능력에 결함이 있어서 혹은 경제적 결함이 있어서 그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때에는 어떠한 국가사회의 후원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무료소송의 경우를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 있어서 그 재산권이 회복이 안 된 경우라든지 혹은 재산권에 관계가 없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재산권이 회복된 이후에는 일정한 법률에 의한 소송의 비용을 국고에 납부하도록 이러한 단항을 넣어서라도 이러한 무산 혹은 무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그 단서에 넣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순주** 윤 위원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박 의원께서 이 소송액을 이렇게 올리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실의 물가 동태와 지수에 의해서 10환짜리 소송이라든지 20환짜리 소송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100배를 인상한데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소송하는 데 있어서는 무료로 하는 제도를 둘 수 없느냐 이것은 소송구제법이 있습니다. 자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재판소에 신청해서 인지를 붙이지 않더라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민사소송법에 있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없으면 이 조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물겠습니다.

(거수 표결)

표결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재석원 수 157인, 가에 83표, 부에 무표로 가결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윤만석 위원장 나와서 그다음 하세요.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원안에는 「소송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함에는 민사소송법 제22조, 제23조에 의하여야 한다」 한데 수정안은 동조 2항 중 「민사소송법 22조」를 「민사소송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여기 이의 없으십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통과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3조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소송의 가액은」 원안에는 「1000환으로 한다」는 것을 수정안은 「10만 환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항의 소송과 그 소송으로 인하여 생길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소송을 병합한 때에는 다액인 1개의 소송가액에 의하여 인지를 첨부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이의 없으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통과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4조 본소와 반소의 목적이 동일한 소송물인 때에는 반소의 소장예 인지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5조 공소장에는 제2조의 규정액에 10분지 5를 가한 인지를 상고장에는 그 규정액에 배액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이의 없으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통과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6조 민사소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서에는 제2조, 제3조 및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수정안에는 「민사소송법 제73조」를 「민사소송법 제71조 또는 제75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이의 없으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통과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7조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반액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원안대로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8조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반액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소송으로 계속된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항의 첨부인지를 합산한다」

이것을 수정안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40조」를 「민사소송법 제442조」로 수정했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없으면 수정안대로 통과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9조 재심의 소송에는 법원의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등 제5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것도 수정안이 없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이의 없으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통과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10조 다음 제기한 신청으로 소송물가액 또는 청구가액이 1000환 미만인 때는 1환의 인지를 1000환 이상인 때에는 2환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일지정의 신청
2. 소송절차수계의 신청
3. 증거의 신청
4. 소송비용 확정신청의 신청
5. 가집행 선언의 신청」

이것은 수정안에는 「1000환」을 「10만 환」으로, 「1환」을 「100환」으로, 「2환」을 「200환」으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이의 없으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통과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11조 다음 제기한

신청으로 소송물가액 또는 청구가액이 1000환 미만인 때에는 2환의 인지를 1000환 이상인 때에는 4환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66조, 제77조의 참가신청
2. 제소 또는 기피의 신청
3. 항고
4. 집행력 있는 정본의 신청, 2통 이상의 신청에는 매 통에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강제집행의 정지, 속행 또는 집행처분 취소의 신청
6. 배당요구
7.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의 신청
8. 채권 또는 기타 재산권의 점유 신청
9. 가집유 또는 가처분의 신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000환」을 「10만 환」으로, 「2환」을 「200환」으로, 「4환」을 「400환」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1호 중 「민사소송법 제66조, 제77조」를 「민사소송법 제64조, 제75조」로 수정했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수정안대로 이의 없으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없으면 수정안대로 통과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12조 답변서 기타 전 수조에 제기하지 아니한 신청에는 전2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것을 수정안에는 「전2조」를 「제10조」로 수정했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이의 없으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없으면 수정안대로 통과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13조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수정안이 없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원안대로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14조 본 법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는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법원은 신청서에게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자가 그 명령에 의하여 상당한 인지를 첨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수정안이 없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

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15조 민사소송법 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송사건에는 본 법 제2조, 제3조, 제6조, 제13조를 신청사건에는 본 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를 준용한다」

이것도 수정안이 없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원안대로 이의 없습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통과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부칙」 「제16조 본법은 단기 42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법은 연월일을 빼 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신다면 행정부의 준비 관계도 있어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최순주** 여러분이 9월 1일에 시행하는 것을 승인해 주시면 통과하겠습니다.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통과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17조 본 법 시행 전까지 시행한 민사소송용 인지에 관한 법령은 폐지한다」

이것은 수정안이 없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이의 없습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통과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윤만석** 「제18조 본 법 제3조 제1항의 소송가액 및 제10조, 제11조의 인지액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증감할 수 있다」

이것도 수정안 없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2독회는 이것으로서 마치고서 제3독회를 들어가는 것이 가하다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거수 표결)

재석원 수 147인, 가에 93표, 부에 무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제3독회에 들어가는데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통과합니다.

의사일정은 끝마쳤습니다마는 긴급동의를 있습니다. 제목은 38 이북 미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 이양에 대하여 내 23일 본회에서 국무총리 및 국

방, 내무장관의 출석을 요청하고 설명을 듣자는 것입니다.

발의자 유봉순 의원 말씀하세요.

#### 4. 국무위원 출석요청에 관한 건

○**유봉순 의원** 38 이북 미수복지구에 대하여 이때까지 유엔 군정을 실시하든바 금번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행정권을 이양하였다는 것을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고 또 백성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례히 진작돼야 될 것이 오히려 늦인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가로 보아서 다행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또 지나간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서 물론 청장년이 피를 흘리고 우리나라가 큰 재해를 입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뜻하지 않은 정전으로 말미암아서 이만한 대가로 5개 군의 지역을 행정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그 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는 그간 여러 가지로 고통도 많았을 것이고 또 가장 불합리하고 가장 곤란한 환경 속에서 이때까지 살아나왔습니다.

한 가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점주가 또는 소유자가 두 번, 세 번 바뀌어져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든지 우리 정부에서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것이요 또 우리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만전의 대책이 서 있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한 인수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도 그냥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나서 첫째로 국무총리와 관계 국방장관 또 내무부장관을 국회에 출석을 요청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안, 또 이양을 받게 된 경위, 이 등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대책을 국회에서 강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견지에서 긴급동의를 제출했습니다.

○**부의장 최순주**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합니다.

이 긴급동의를 채택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거수 표결)

보고하겠습니다.

재석원 수 147, 가에 94표, 부에는 무표로 이것

은 가결되었습니다.

오늘은 의안 관계로 산회하고 23일 오전 10시에 다시 모입니다.

(하오 0시15분 산회)